

1995
Mc.c.9

가정폭력 방지법 전문가 워크숍

일시 : 1995년 7월20일 오전 10시30분 ~ 오후 4시

장소 : 기독교 연합회관 4층 소회의실

주최 : 사단법인 한국여성의전화

가정폭력 방지법 전문가 워크숍

한국여성의전화

머 리 말

한국여성의전화는 '83년 창립한 이래 아내구타와 성폭행등 여성에 대한 모든 폭력의 문제를 다루어왔습니다. 또한 1987년 부터는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매맞는 아내들과 강간당한 여성들을 위한 긴급 피난처인 '쉼터'를 만들어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한국여성의전화에서는 이러한 활동들 속에서 우리사회가 가정폭력 문제를 개인의 문제 사적인 영역으로 간주하여 은폐된 범죄로 내버려두었음을 알게되었습니다. 이에 한국여성의전화에서는 가정폭력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법적 제도적 대책마련을 위해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기 위한 여러가지 노력을 왔습니다.

특히 '94년도에는 UN이 정한 세계가정의해를 맞이하여 '가정폭력 추방 주간'을 선포하여 '가정폭력 방지법 추진을 위한 전국연대'와 함께 가정폭력 사진전, 여성영화제, 가정폭력 방지법 추진을 위한 토론회등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사기간 동안 어떤 여성들은 "이런 법이 지금 있느냐, 나도 이런 도움이 너무나 필요한 사람"이라며 도움을 기대했다가 아직 아무런 법적 제도적 없다는 저희들에 답변에 실망하기도 하여 저희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기도 했습니다.

95년들어서도 가정폭력으로 인한 살인사건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3월 18일 18년 간 자신과 어머니 어린여동생을 상습적으로 폭행해온 아버지를 17세의 어린 소년이 우발적으로 살해한 전경진 사건. 남편의 잔인무도한 구타와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성적학대를 견디다 못해 남편을 살해한 김명희씨 사건. 13년간 남편의 극심한 구타와 의처증에 시달려오던 최현옥씨의 남편 살해사건 등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이 가해자가 되어 법정에서 서고 있는 사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명희씨 사건의 경우 사건 3일전 부터 계속되는 아버지의 행패에 딸이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지만 경찰을 '가정문제라서 개입할수 없다. 집안에서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전경진군 사건에서도 호프집에서 구타당하던 전경진군의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해줄것을 요청하여 가게 주인이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경찰은 나타나지 않고 어머

나의 안전이 걱정된 전경진군이 나타났고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어쩌면 막을수도 있었던 존속살해사건이나 남편살해사건이 발생되도록 그대로 방치한 것은 가정폭력에 대하여 무지와 무대책한 우리사회의 현실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이러한 사건을 미연에 방지할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 '가정폭력 방지법 전문가 워크숍'은 이러한 취지에서 아내, 아동, 노인, 등 사회경제적 약자들에게 발생하는 가정폭력의 실태와 법 개입의 필요성을 알아보고 외국의 입법에 를 살펴보면서 우리 현실에 합당한 법제정의 방향성들을 논의해 볼것입니다.

작년의 '가정폭력에 대한 공개토론회'에 이어 이번 '가정폭력 방지법 전문가 워크숍'에서 는 좀더 구체적인 가정폭력 문제에 대한 법제정의 방향성을 토론히여 앞으로 이어질 '가정폭력 방지법(가칭)'의 입법을 위한 여러가지 활동과 가정폭력 추방을 위한 운동을 힘차게 펼칠수 있는 밑반침이 될수 있도록 해야 겠습니다.

저희 한국여성의전화와 '가정폭력 방지법 전국 연대'는 앞으로도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입법활동과 가정폭력을 종식시키기 위한 운동을 힘차게 펼쳐나갈 것입니다.

1995. 7. 20.

한국여성의전화

차례

@ 머리말

@ 발제 1 : 아내학대의 실태및 법개입의 필요성

- 신 은주 (피어선대 사회복지교수, 한국여성의전화 전문위원)

@ 발제 2 : 아동학대의 현황과 발견,개입,치료 및 예방을 위한 법적조치

- 이 배근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조정관)

@ 발제 3 : 노인학대의 실태와 법의 필요성

- 서 혜경 (노인의전화 상담 이사)

@ 발제 4 : 모자 일시 보호시설에 온 가정폭력의 실태

- 고 송주 (광주여성회관 상담 실장)

@ 발제 5 : 가정내 폭력에 관한 외국의 입법에

- 이 상덕 (한국여성의전화 상임 부회장)

@ 발제 6 : '가정폭력 방지법(가칭)' 입법의 방향

- 이 찬진 (변호사/ 여성평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 부 록 : 가정폭력 사건 일지

아내학대의 실태 및 법 개입의 필요성

신 은 주(피어선 대학교 교수)

1. 서 론

최근 우리사회에서는 남편의 구타로 인해 가정이 파괴된다거나 아내를 상습적으로 구타하던 남편이 살해당한 사건들이 일어나, 가정 내에서의 폭력이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사회는 아직도 가정내의 폭력은 가족 스스로가 해결해야 할 사적인 문제로 혹은 부부간의 문제로 간주되었고, 또한 전통적인 남존여비의 의식구조 때문에 피해자가 용기를 내어 상담기관이나 병원 나아가 법과사회에 호소한다 하여도, 그 심각성이 인정되고 보호치료를 받기보다는 오히려 피해자가 문책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여기에서는 가정폭력의 여러 유형 중 아내학대에 초점을 두어 그 실태를 파악하고 사회복지적 대책과 법 개입의 필요성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한국의 아내학대의 상황을 보면 학대의 정도와 빈도로 인해 그 피해의 심각성이 매우 커서 한 사회의 가장 기본적 구성단위라 할 수 있는 가정의 존립마저 위협받고 있는 실정에 있다. 연구자는 한국사회에서의 아내학대의 현실을 기존의 연구와 더불어 한국여성의 전화 '쉼터'에서 보호받고 있는 여성들의 사례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¹⁾ 그런데 이에 대한 논의에 앞서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아내학대와 가정폭력, 아내구타 등의 용어들이 큰 구별없이 혼용되고 있다. 한편 페미니스트 시각에서 보면 '배우자 학대'나 '가정폭력' 같은 중립적인 개념은 아내학대 문제가 남성과 여성간의 불평등한 권력배분이라고 하는 사회적 맥락을 모호케 하므로 여기에서는 이러한 페미니스트 시각을 채택하여 아내학대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아내학대를 정의하고자 할 때 고려하여야 할 것은 첫째, 학대의 대상이다. 대부분의 문헌에서는 부부폭력을 법적으로 결혼한 부부사이에서 행해지는 학대에 초점

1) 신은주(1995), "아내학대에 대한 페미니스트 접근에 관한 사회사업적 분석", 서울대 박사학위논문.을 참조할 것.

을 맞추어, 남편이 아내를 학대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혹은 두 사람 모두가 학대행위에 개입하는 문제로서 다루고 있다. 또한 법적으로는 남이 되었지만 前배우자, 동거중인 상태에 있는 배우자를 포함시키고 있다.

둘째, 학대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폭력(violence), 구타(battering), 학대(abuse) 등의 용어는 원래 의미상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폭력은 주로 신체적 공격(physical aggression)의 모든 행위를 일컫는 말이며, 구타는 문헌상에는 반복적인 정서적, 심리적 학대까지도 포함하나, 실제로는 신체적 폭행(assault)의 심한 공격행위를 나타내는 말로 쓰여지고 있고(Deschner, 1984), 학대는 개인에게 손상을 입히는 신체적, 비신체적 행위 모두를 포함한다. 그러나 이들은 경우에 따라서 같은 뜻으로 혹은 다른 뜻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부부간의 폭행은 신체적 위해행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정신적인 깊은 상처를 호소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기 때문에, 본 연구자는 학대라는 용어가 적절하다고 본다.

셋째, 학대의 범위에 관련된 것이다. 학대는 밀거나 따귀 때리기에서부터 시작하여 흉기를 사용하거나 성적 압력을 가하는 등의 신체적인 것과 배우자에게서 받는 수치심과 언어적 비하 등 심리적인 것까지 포함한다.

넷째, 행위가 일회성이냐 아니면 반복적인 가도 중요한 분류기준이 된다. 이에 대해서는 심각한 폭력의 경우는 단 일회일지라도 모두 학대성 폭력으로 간주하는 방법과 한 달에 한번 이상 등 어느 정도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심각한 폭력만을 학대성 폭력으로 간주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자는 이 문제에 관한 한 학대행위가 일회적으로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므로, 학대를 '배우자의 공격으로 인해 심각한 반복적인 신체적 상해를 입게 되는 경우'라고 정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본 연구자는 이상에서 기술한 점과 함께 사회 속에서 일어났더라면 법의 처벌을 받아야 할 폭행도 부부사이에서 일어났을 경우는 전통적으로 가정문제(family-dispute), 가족간의 갈등(domestic-conflict)으로 취급받게 되는 현실을 고려하여, 어떠한 형태의 신체적 학대도 부부간의 갈등 해소방법으로는 부당하며, 학대의 위협도 실제로 행하는 학대만큼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다음과 같은 아내학대 정의를 적절한 개념으로 채택한다. MacLeod(1987)에 의하면 아내학대란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신체적, 심리적, 경제적, 성적, 언어적인 폭력의 직접적인 희생자인 여성이 경험하는 무기력감이나 뒷에 걸린 느낌뿐만 아니라 존엄성, 통제력, 안정의 상실'을 말한다. 이 정의는 정서적, 심리적 학대가 아내학대의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므로, 학대받는 여성을 돕는 전문가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2. 아내학대의 실상

1) 사회문제로서의 아내학대

아내학대의 문제는 아직까지 그 심각성에 비해 사회문제로 충분히 인식되지 못했다. 일반적으로 아내학대는 정신병리적 증상이 있는 특별한 가정에서만 드물게 발생하는 사건으로 인식되어졌으나, 최근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아내학대는 일반가정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보건사회부의 조사결과(1992)는 61%의 여성이 구타당한 경험이 있다고 하고 있고, 권명희와 신은혜(1984)의 연구에 의하면 '한국여성의 전화'에 상담을 하러 온 여성 중 40%가 구타문제를 호소하고 있으며, 한국형사 정책연구원의 조사결과는 남편에게서 심하게 구타당한 경우가 조사대상자(544명)의 10.1%로 나타났다(1992)²). 이를 미국의 경우와 비교하면 미국의 경우(1985) 폭력을 경험한 여성은 11.3%, 심한 폭력은 3.0%로 우리 나라의 아내에 대한 폭력이 미국보다 약 3배 가량 더 높은 것으로서 우리 나라에 가정폭력이 만연해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Shim, 1993). 그러나 이러한 학대문제에 대한 한국사회의 전통적 가치나 사회적인 분위기는 아내학대 문제를 오히려 부인이 남편의 학대를 유발시켰다는 식으로 왜곡하고 강조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예를 들어 '부인이 매맞을 짓을 했으니까 때린다'라는 생각이 과거 아내학대를 정당화하는 학대의 원인론으로 인정을 받아왔다. 그러나 학대의 실상을 보면 소위 '매 맞을 짓'이라고 지목되는 것은 남자가 여자를 구타하기 위해 트집을 잡은 것에 불과하며, 매맞기 좋은 성격이라고 지칭되는 부인의 성격도 알고 보면 계속된 구타의 결과로 비틀려진 노예의 상태에 불과하다고 한다. 한국에서 남편에 의한 아내학대는, 남성의 잘못된 우월의식 즉 '마누라는 처음부터 길을 잘 들여야 한다'는 식의 전통적 관념과, 부인의 자포자기적인 패배의식, 경제적 자립능력이 없음으로 인해 생기는 아내의 무력감, 남편에 대한 종속, 가정문제는 제 3자나 법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의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의 의식, 기타 법제도적인 제한 등으로 인해 아내학대 문제에 대한 전통적인 해결책은 피해자의 책임을 강조하고 피해자의 순종과 인내를 강

2) 부부사이에 일어나는 아내학대의 실태를 보면 1989년 한국갤럽의 조사에 의하면 57.5%의 남편이 배우자를 때린 일이 있다고 하며, 1991년 '한국여성의 전화' 구타상담(전화상담) 총 1,167건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일주일에 2-3회 이상 맞는 경우가 47.1%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아내학대가 상습적이고 주기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대방법을 보면 '손발로 구타'하는 경우가 76.5%로 가장 많고, '닥치는 대로' 46.7%, '흉기사용' 29.1%, '가둬놓고 때림' 18.4%, '옷 벗기고 때림' 10.6%, '담배불로 지짐' 7.5%의 순으로 나타났다.

요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아내학대의 문제는 아내 한 사람에게 심한 정신적, 성격적 질환과 신체적 질병을 일으켜 개인적인 파멸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가족구성원 전체의 문제로 파악된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보통 아내를 학대하는 남편은 본인이 학대 가정에서 성장한 경우가 많고³⁾, 성격장애나 의처증, 열등감, 사회적으로 부적응된 자들로 이들은 아내학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녀도 학대대상으로 삼는 것이 일반적이다⁴⁾. 이와 같이 아내학대의 문제는 그 심각성에 비해 아직까지 사회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적고, 그에 대한 규제책도 거의 없는 상태이다.

또한 아내학대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학대받는 아내를 보호하기 위한 민간시설로는, 1983년 '한국여성의 전화'가 창립된 이래 현재 13개 기관이 있을 뿐이며, 정부차원에서는 1992년 서울시와 광주시에 각각 1개소씩 학대받는 여성을 위한 일시보호소를 시범운영하고 있는 정도이다. 이와 같이 아내학대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보호시설은, 현재 그 수가 적고 프로그램도 매우 빈약하기 때문에 아내학대로 인해 긴급한 보호 및 전문적 상담이 필요한 피해여성에게 즉각적이고 충분한 도움을 주기에는 매우 미흡하며, 나아가 가해자에 대한 예방 및 치료차원의 프로그램에 관해서는 속수무책인 실정에 있다.

2) 학대받는 아내들이 겪는 문제

그러면 학대받는 아내는 왜 가해자를 떠나지 못하는 것일까? 학대받는 아내가 집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첫째, 가장 기본이 되는 이유로서 공포감이다. 공포감은 그들의 행동, 그들의 결정,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그들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다음으로 학대받는 아내가 이웃에게 도움을 구하려 달려가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아내가 도망치면 남편은 어떻게 해서든지 추적하여 접근해 온다. 자기 동네를 떠나서 완전히 자취를 감출 수 없다면 집을 나간 여성은 몰래 추적해 오는 남편에게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 또 하나의 이유는 '그것도 결혼생활의 일부분이기 때문'이고 '아이 때문' 등이다. 다음으로 전통적인 결혼관에서 비롯되는 이유로서 폭력적인 남편을 떠나지 못하는 보편적인 합리화는 '그렇지만 그 사람은 나를 필요로 한다'

3) 한국여성개발원(1993)의 조사결과 조사대상자 중 무응답자를 제외한 35명 중 24명의 남편이 폭력가정에서 성장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형사정책연구원(1992)에서도 응답자 1200명(여성도 포함) 중 64.6%가 부모로부터 폭력을 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4) '한국여성개발원'(1993)의 조사에 의하면 부인을 때리는 남편이 아동까지 때리는 경우는 남편 중 15명(28.8%)이었고, '한국여성의 전화' 결과는 55명인 38.5%였다. 한편 1984년 미국의 Texas 연구에 따르면 남성학대자의 24%가 아동폭력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는 것이다. 부인은 모성에 내지 자기 희생적 관점에서 자기 남편이 폭력적일수록 그것을 단지 병이 더욱 악화되는 것으로 이해하면서 남편이 더욱 자신을 필요로 한다고 쉽게 결론을 내린다. 다섯째로 여성들은 대부분 만약 자신이 '어쨌든' 가부장적인 사회문화가 규정하는 아내의 원형에 부합하지 못하면 죄책감을 느끼게 되며, 자기가 당연히 맞을 짓을 했다고 믿게 되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그들의 경제적 무능력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설혹 머무를 곳이 있다고 해도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경제력과 일을 해본 경험이 없어 그들은 새로운 일에 대한 엄두를 내지 못한다. 일곱째, 일단 결혼을 하면 그 집 귀신이 되어야 한다고 교육받은 여성들이 이혼을 결정한다는 것은 일종의 혁명적인 결단이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어려움은 이혼절차를 밟는다고 해도 여성이 직면하고 있는 위험과 사태의 긴박성은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결과적으로 여성이 양보하게 되는 화해노력이 어쨌든 선행되어야 한다고 믿는 주변사람들을 설득시키는데 또 다른 수고를 해야 한다. 결국 사회의 전통적인 가치규범으로부터의 압력이 여성으로 하여금 모든 희생에도 불구하고 아내와 어머니로서 가정을 지켜야 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강제한다. 나아가 학대받는 여성이 떠나려고 결정한 경우에도 생활양식의 변화와 수입의 격감에 대한 적응, 이혼녀로서 사회에의 재통합, 편모로서의 생활, 탁아 서비스, 법률상담, 건강보호 같은 필요한 서비스의 부족이나 결여 등은 여성이 자신의 결정을 실행에 옮기는 것을 주저하게 만든다.

위와 같이 떠나지 못하는 나름대로의 이유들이 있지만 서비스 개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학대받는 여성 스스로가 자신을 '학대의 진정한 희생자'로 봐야 한다(Ferraro & Johnson, 1983). 즉 그들이 잘못해서 학대받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들은 학대의 희생자라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폭력의 합리화를 부인하고 대안을 모색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학대받는 여성들 혼자서는 위와 같은 사실을 인식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학대영역에서 훈련받은 다양한 자원을 가진 전문가들로 조직된 체계의 원조를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이다.

학대의 심리적인 영향으로서 피해여성은 사회적 지지체계로부터의 소외감과 함께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조차 수치심을 느끼게 되고, 사고력과 에너지를 모두 소모시킬 정도의 공포를 경험하며, 낮은 자아존중감과 상황에 대한 양가감정을 가지게 되고, 학습된 무기력에 시달릴 뿐만 아니라 원조자를 포함하여 모든 타인에 대해 의심하게 되며, 자기를 비난하고, 현실을 왜곡하게 된다(Walker, 1979, 1984; Ferraro & Johnson, 1983; Hofeller, 1983; Sinclair, 1984).

학대받는 아내들은 지속적인 고통을 인내해온 결과로 고립감, 우울증, 공포 등의 다

양한 감정을 경험한다. 대부분의 학대받는 아내들은 그들이 학대관계를 떠나지 못하게 하는 이유에 대해 인식하지 못한 채 폭력관계로부터 지금까지 떠나지 않은 것에 대해 자신을 비난한다.

아내학대 문제를 연구해온 조사자들은 학대경험이 여성들의 자아존중감을 잠식함으로써 결국 자기확신감을 상실케하고 자신을 무가치하게 느끼게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학대받는 아내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은 의심할 여지없이 위협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학대받는 아내들은 자살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고 다양한 정신 신체적 증상으로 고통받으므로 정신과적인 도움을 요청된다.

3. 아내학대에 대한 기존의 대응

아내학대에 대한 대책은 아내학대를 역사적으로 용인되는 하나의 현상으로 간주해온 사회, 역사적 맥락에서 모색되어야 하므로, 서비스 개입은 아내학대에 대한 사회적 태도를 변화시키고, 아내학대를 범죄로 규정하는 쪽으로 지향되어야 한다. 나아가 학대받는 아내가 직면하는 위와 같은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직과 전체 지역사회는 응급서비스, 지지서비스, 법률서비스 그리고 교육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집중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따라서 가정폭력으로 인해 피해자와 가해자를 치료하고 변담하는 일은 법적인 문제도 개입된다는 점에서 다른 일반적인 치료와 차이가 있다.

서비스 개입은 학대받는 아내가 학대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그들을 원조하기 위하여 다음의 세 가지 목표를 가져야 하는데, 첫째 목표는 여성이 위협에 처해 있을 때 현실적인 안전계획을 제공해주는 안전요인이고, 둘째 목표는 여성의 내재화된 무력감을 평가하는 것인데, 이는 여성이 자신의 운명을 '통제'할 수 있다고 진정으로 믿을 수 있게 하고, 또한 그들이 요구하는 원조형태를 정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학대받는 아내가 대안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능력을 활성화시키기 이전에 먼저 학대의 심각성을 부인했던 부정적인 자아개념에 도전하여 자신의 신념체계 자체를 변화시켜야 한다. 셋째 목표는 분노 및 수치심을 분출시키고 관계와 꿈의 상실에 대한 깊은 슬픔을 표현하며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키고 교육 및 취업 같은 개인적 목표설정 및 긍정적인 지지체계를 통한 개인적 능력향상이 포함되어야 한다(Pressmen, 1984). 따라서 아내학대에 대한 상담서비스의 효과성은 자신의 신변안전을 위해 계획을 세우고자 노력하는 여성의 태도와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력의 증진, 그녀에게 선택기회가 얼마나 확대되었는가에

의해서 평가되어야 한다.

아내학대 문제에 대한 정의와 적절한 개입체계에 대한 관점은 다양한 기관들 간에 차이를 보여준다. 최근에 법률기관, 형법체계, 사회복지서비스의 문제를 인식함으로써 아내학대 문제가 복합적인 특성을 가지므로 지역사회를 근거로 하여 예방, 교육, 개입을 위한 조정되고 포괄적인 모델이 요구된다는 주장이 있다(McShane, 1979). 즉 피해여성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는 이상적으로는 정서적, 신체적 서비스를 포함하여 관련 법률정보, 직업준비 등을 모두 포함하는 통합적인 서비스를 통해 종합적 관리가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점차 희생자 개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보다 가족을 단위로 하는 서비스를 강조하게 되는 것은, 쉼터를 찾은 학대희생자의 40%-70%가 다시 학대배우자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인식했기 때문이다(Fleming, 1979; Martin, 1976). 그리고 희생자의 대다수가 학대행위가 없는 관계로 다시 정립하기를 원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Caputo, 1988a).

1) 아내학대에 대한 기존 대책의 문제점

학대받은 여성들은 문제해결을 위해 다양한 자원과 접했으나, 문제해결에 도움을 받지 못했거나 오히려 학대에 대해 비난받은 경우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들이 지금까지 접했다가 충분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서비스 기관에 의해 비판적이거나 냉담한 반응을 받음으로써 '희생자를 비난하는' 사회의 태도를 경험한 기관은 친구, 친정식구, 시집식구, 이웃, 상담기관, 경찰, 병원 등이었다. 남편의 폭행 때문에 이웃의 신고로 경찰서에만 여성이 있는데, 경찰관이 "부부간의 문제이니 들어서 해결하라."는 식으로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가출 이후에 여성들이 직면하는 가장 절실한 문제는 자녀양육과 관련된 문제와 취업 문제로 대별되는데,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취업을 하기보다 식당 주방이나 파출부 등의 임시직을 얻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자녀양육의 문제나 주거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 그들의 선택대안을 제한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여성들에게 가장 절실한 서비스는 독립할 때까지 자녀를 임시로 맡길 수 있는 시설로서 예컨대 모자원시설이 개방되는 것이었는데, 모자원은 사별한 여성세대주를 주요대상으로 하며 거주기간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가출여성이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이 아니었고, 위탁시설도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탁모제도는 입양아동을 입양될 때까지 임시로 맡아 기르는 제도이므로, 학대받는 여성들에게 해당되는 제도가 아니었다. 따라서 이혼을 고려하는 여성들은

아동양육을 원한다해도 현실적으로 사회적인 탁아서비스가 부족하므로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학대하는 남편에게 자녀를 맡기는 쪽으로 선택을 해야만 했다.

자녀양육문제와 취업문제에서 여성들이 어려움을 경험하고 현실의 장애를 느끼면서도 이혼을 결심했다 하여도 그들이 다시 부딪히는 문제는 이혼과정에서 맞게 되는 법률적인 문제와 신변보장의 문제이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심한 학대를 당하면서 죽음의 위협을 느껴 준비없이 가출을 하게 되는 순간부터 경제적인 위기를 맞게 되므로, '여성의 전화'의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이용해서 이혼 소송의 가능성을 확인한다 해도 경제적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 '여성의 전화'의 스텝들이 이혼소장을 써주는 등 재판에 따르는 절차에서도 개입을 하고 있지만, 법률구조공단 등의 법률부조 서비스가 더욱 요청된다. 또한 여성들의 경우,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남편의 보복행위를 두려워하므로 재판의 전 과정을 통해 신변을 지켜주는 서비스가 보완되어야 하겠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학대받는 여성들의 욕구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자원과의 연결을 전담하는 사회복지사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며, 관련 사회복지기관과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2) 아내학대와 관련된 현행법의 문제들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아내학대에 관한 처벌법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렇다고 아내학대 문제에 적용, 처벌 할 수 있는 현행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형법 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규정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아내학대 남편을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는 있다.

그러면 이러한 현행법 하에서 아내학대 사건은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가? 현행법 하에서도 폭력남편을 고소할 수는 있으나 실제로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고소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이와 같은 형사처벌 외에 아내는 남편을 고소한 상태에서 남편과 함께 살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먼저 남편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민법 친족법 840조 3호)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6호) 를 근거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 전업주부가 많은 우리 현실에서 여성의 경제적 독립의 어려움과 자녀와 헤어지기 어려워하는 어머니로서의 정서를 고려할 때, 이혼소송 제기도 어려우며 더구나 형사고소는 사실상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또한 학대받는 여성을 보호할 수 있는 관련법으로는 <모자복지법>이 있는데, <모자

복지법>상 제 4조 정의 에서 '모'의 개념은 1.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여성 2.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이므로 가정폭력의 피해여성의 경우도 이 법에 포함하여 보호받을 수 있다. 실제로 시행규칙 제2조 '모'의 범위를 보면 2호에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여성'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주민등록 상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모자세대주로 포함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모자복지법에 근거하여 복지급여와 복지지원금의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모자복지법상 복지급여에는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직업훈련비 및 훈련기간 중 생계비, 아동양육비 등이 명목화되어 있고, 복지자금대여에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 아동교육비, 의료비, 주택자금 등이 명목화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구타당한 아내가 모자복지법에 의한 복지급여수혜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

구타당한 여성에게 치료, 보호 등의 도움 뿐만 아니라 그들이 자립하여 자주적인 여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탁아, 취업지도, 여성의식화 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정부차원의 모자복지시설은 현재 기관체류기간이 1-2달로 되어 있으며, 취업을 지도하기 위한 직종도 미리 정하여 있기 때문에 선택에 한계가 있다. 구타당한 여성이 남편을 떠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신적인 안정과 신체적인 회복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자주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취업지도의 부분은 직종별 상당 기간의 취업준비시일이 요구되고 취업의뢰시에는 수요기관과의 요구와도 맞지 않아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4. 아내학대에 대한 대책

다음은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특성을 바탕으로 아내학대에 대한 바람직한 개입의 방향을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살펴보겠다.

'여성의 전화' 센터에 있는 여성들이 겪는 문제 중 가장 큰 문제이며 공통적인 문제는 자녀와 관련된 것으로 우선 자녀를 버리고 나온 것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며, 학대관계에서 벗어나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지를 모색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녀를 안전하게 보호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자녀에게 문제를 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또한 이혼을 결심한 상황에서는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는 현실적인 상황 때문에 갈등하는 모습도 보여준다.

따라서 학대받는 여성들의 문제해결을 위해 자녀문제에 대한 개입이 가장 중요하며,

개입방법으로는 양육을 원하는 여성에게는 탁아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이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취업알선이 필수적이다.

둘째 문제로는 학대받은 여성들은 장기적인 학대관계 속에서 친구, 사회관계로부터 소외당하게 되며 이 소외로 인해 역으로 점점 더 남편에게 의존하게 된다. 따라서 학대받은 여성들의 소외문제에 대한 사회사업적인 개입이 선행되어야 한다.

셋째,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구타당한 경험이 있는 성원과 그렇지 않은 성원을 비교하면,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심하게 구타당한 경험이 있는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자신감의 결여로 인하여 집단 개입에도 불구하고 개인적 능력향상이나 선택대안의 고려 등에서 제한된 성과를 보였다.

넷째, 경제적 능력의 정도 및 취업 여부와 선택능력과의 관련성을 보면, 직업이 있을수록 또한 경제적 능력이 있을수록 자녀양육이나 이혼 등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좀더 많은 대안을 고려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혼 등 다양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자립을 위한 장기적인 취업훈련 및 알선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다섯째, 사회적 지지나 사회자원과의 관계를 보면 대부분의 성원들이 친구, 친정으로 부터는 일시적인 도움을 받았으나, 상담기관, 사회복지기관에 도움을 요청한 경험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찰이 '아내구타 문제에 대해 가정내의 문제이므로 부부끼리 해결하라'는 식의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여기서 특기할 만한 사실은 학대받은 여성들의 친정에서 '출가의인'이라는 식의 전통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와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실질적인 지원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이에 반해 친정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은 성원의 경우에는, 장래에 대한 선택 및 결정에 대해 안정적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위에서 살펴 본 특성을 바탕으로 하여 학대받은 여성을 위한 사회복지적 대책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일시보호소의 서비스 확충이다. 학대상황에서 가장 시급히 필요한 것은 '피난처'이므로,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피해의 충격에서 시급히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일시보호소는 매우 중요하다. 앞으로 증설되는 일시보호소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야만 피해 여성이 접근하기 쉬울 것이며, 적절한 시기에 원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일시보호소에 있는 동안 피해여성들은 학대에 따르는 정서적 영향을 극복하고 가족을 포함한 인간관계와 미래에 대한 결정을 내릴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연구결과에서 제기된 문제점은, 쉼터에 아이를 동반하지 못하므로 자녀에 대한 걱정과 불안 때문에 여성들의 상담 효과가 제한되었고, 취업준비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파출부 등 일시적이며 저

임금의 일자리밖에 얻지 못하는 관계로 실질적 자활이 어렵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쉼터에서 어린이 집과 직업준비프로그램까지의 제공해야 하는데, 이러한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관련 전문가들의 팀웍이 필수적이며, 사회복지사의 적극적인 개입이 요청된다. 한편 어린이가 함께 목격 되는 경우, 많은 요인을 고려해야 하므로 어린이를 동반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그 이유는 현재의 여건으로는 아동의 불안이 크고 타인과 새로운 적응을 해야 하며, 학교와 두절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아동의 동반 여부에 관해서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지만, 본 연구자는 학령전의 영, 유아의 동반을 허용함으로써, 내담자의 불안을 감소시켜야 한다고 본다.

둘째, 학대받은 여성들의 긴급한 욕구와 관련지어 살펴본다면, 우선 자녀를 양육하고자 하는 여성에게는 지역사회 어린이 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여성으로 하여금 보호대상자로 선정되어 보육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장기적인 직업재활을 위해서는 각종 사회단체에서 시행하는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구체적인 개입을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학대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주위로부터도 소외당한 여성들에게는, 지역사회복지관 등에서 자조집단을 구성하여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고, 앞으로 상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준비단계를 마련하는 것도 사회복지가 개입할 부분이다.

사회복지 정책의 과제로서는 여성의 인식변화와 현실상황과의 괴리를 어떻게 좁혀나가는가 하는 것이다. 즉, 현재의 상황에서 여성이 이혼을 결심했을 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현실은 수입의 격감, 이혼녀로서의 낙인, 편모로서의 생활, 탁아서비스 등의 사회서비스의 부족이나 결여로 인한 불이익 등이다. 그러므로 여성들의 인식변화에 따른 법률이나 사회복지정책의 변화가 병행되어야만 한다.

5. 결 론

지금까지 아내학대의 실태 및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러나 아내학대의 문제해결을 위한 서비스 개입의 방향은 아내학대의 문제뿐만 아니라 부모의 구타상황에 노출되어 동일한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아동 및 가족 성원 모두의 욕구를 고려하여 학대의 희생자를 보호하고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모든 관련기관의 협조 하에

5) 실제로 자매복지관에서는 시설이 이주하기 전 지역인 구로공단에서의 산업체와 연계하여 쉼터이용자에게 부업을 소개하고 있는데, 시간도 활용하고 작으나마 생활비를 벌 수 있어서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가족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이러한 가족유지의 개념은 아내학대가 아동학대의 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으므로 (McKay, 1994), 가족 단위의 차원에서 폭력순환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가족을 적절한 자원체계와 연결시킴으로써 가족의 기능을 강화시키며 지역사회 내에서 효과적으로 기능 하도록 돕자는 목적 하에서 도출되었다. 이런 목표를 위해서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학대받는 여성들의 보호 및 예방 프로그램을 구조화해서 지역사회에 현존해 있는 법률기관, 의료기관, 쉼터, 정신건강 서비스기관, 사회복지기관 및 취업훈련기관 등 관련기관 전문가들이 협조체계를 이루어 학대가정에 대한 사례회의(case consultation), 자원개발, 지역사회행동을 위한 조직화 등을 통하여 해당 학대가정에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와 같이 여성 개인의 문제차원이 아닌 가족 전체의 문제라는 관점에서 좀더 거시적이고 총체적인 접근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첫째, 아내학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해결은 학대의 피해자에 대한 프로그램보다 가해자에 대한 치료 및 예방 프로그램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가해자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수적이라는 점이다. 둘째는 아내학대에 대한 법적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법규정의 명시는 아내학대의 불법성과 그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서비스 제공의 근거를 제공하는 한편, 사회적인 변화의 촉매로도 작용하여 의식의 변화와 함께 실제적인 예방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셋째는, 법적 제도 사이에 그리고 법적 제도와 민간 프로그램 사이에 긴밀한 연계관계가 필요하다. 즉 형사적 절차와 구타자 프로그램 같은 사회복지적 절차들이 서로 긴밀히 연계되어 있어야 하고 이들 법적 처분을 실현하도록 도와 줄 민간단체나 반민 반정부 단체의 개입 프로그램과의 연계가 긴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가정폭력 방지법 추진을 위한 전국연대(1994). 아내구타, 아동학대, 깨어진 가족 공동체: 1994 세계 가정의 해, 한국가정의 현실.

대학 가정의학 교육자 협의회(1995). 가정폭력: 그 해결에의 다각적 접근.

신은주(1995). 아내학대에 대한 페미니스트 접근에 관한 사회사업적 분석.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오정진(1995). 아내구타의 원인과 대책에 관한 연구: 법안을 위한 제언.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한국여성개발원(1993). 가정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2). 가정폭력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Hamlin, Elwood, R(1991). Community-Based Spouse Abuse Protection and Family Preservation Team. Social Work. Vol. 36. No. 5. 402-406.

Hotaling, G. T. et als. (eds) (1988). Coping with Family Violence: Research and Policy Perspectives. Sage Publication.

Walker, L.(1984). The battered women syndrome. New York: Springer.

아동학대의 현황과 발견, 개입, 치료 및 예방을 위한 법적 조치

이 배 근
(유니세프 한국 위원회 조정관)

1. 서 론

우리 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아동학대의 문제와 대책 방안으로서는 첫째로 아동학대의 범위와 개념의 규정, 둘째로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인식의 제고와 연결 망의 구축, 끝으로 아동학대의 발견, 치료, 예방을 위한 법적 조치로서의 아동학대 신고의 의무화를 포함한 아동학대 방지법의 제정 등이 있다고 하겠다.

1.1 아동학대의 정의와 범위의 규정

아동학대의 범위가 모호하고 사회적으로 합의된 정의가 없는 한국적 상황은 연구자들이 주관적 해석에 따라 아동학대의 발생률, 인식도, 심도 등에 있어 커다란 편차를 극복할 수 없다.

따라서 아동학대가 점증되고 있는 사회문제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아동학대의 발견, 개입,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우리의 당면 과제는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아동학대의 정의와 법적, 제도적 장치를 위한 아동학대의 범위를 설정하는데 있다.

1.2 국민적 인식의 제고와 연결망의 구축

우리 나라는 전통적인 유교 사상의 영향으로 부모에 대한 효도와 스승에 대한 존경이 문화 관습적인 덕목으로 강조되어 왔으며 아동에 대한 부모의 훈육 권과 학생에 대한 교사의 징계권에 비해 아동은 보호 대상으로 간주되어 왔을 뿐 아동의 권리의 주체

로서 인식하는 데는 매우 미약한 것이 우리의 실정이다.

비록 헌법(제10조)은 아동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어린이들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약속인 대한민국 어린이헌장이 아동의 존엄성과 아동학대의 금지를 선언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아동의 인권에 대한 미약한 국민적 인식은 체벌이 훈육과 혼용되어 아동학대를 당연시하거나 또는 아동학대를 확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신체적 학대는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과 장애를 가져오며 어린 시절 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성인이 되어 아동을 학대하는 가해자가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아동학대의 결과는 매우 심각하며 따라서 아동학대의 예방을 위한 국민적 인식의 제고를 요망한다.

또한 아동학대는 가정적, 사회적 폭력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아동학대의 발견, 개입, 치료, 예방을 위한 관련 전문 직종간의 지역별 연결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1.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법적 조치

아동학대가 보편화되어 있으며 그 정도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사례는 신고되지 않고 있으며 학대를 받고 있거나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이 발견되어도 즉각적인 관계 기관의 개입권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으며 아동을 가해 부모로부터 분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아동학대를 발견하고 치료하며 예방하는데 사회가 능동적,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위해서는 신고의 의무화를 포함한 법적 조치로서의 아동학대 방지법의 제정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아동학대 방지에 대한 유일한 법적 근거인 아동복지법 제18조 제9항은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아동을 학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 있으나 아동을 학대하는 행위의 구체적인 규정과 범위가 모호하여 법적 구속력을 갖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 또한 이 법조항의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인 동법 제34조 3항은 아동을 학대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어 법적 제재 조치가 매우 미미하여 실제로 이 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된 사례가 매우 적은 실정이다.

II. 아동학대의 정의

어떤 용어의 개념을 정의한다는 것은 그 용어가 내포하는 내용의 범위를 확대 또는 축소시킬 수 있으며 한정되는 범위는 수행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의 내용 및 접근 방법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아동학대에 관한 초기의 논문을 쓴 Kempe는 피학대아증후군(Battered-baby syndrome)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아동학대의 대상을 영아로 한정하였고 학대의 유형도 신체적 구타만을 다루었는데, 그가 말한 피학대아 증후군의 의미는 부모나 가정 위탁 부모들로부터 심각한 신체적 학대를 받은 영아들의 임상적 상태를 특별히 규정한 것으로서 피학대아 증후군 즉 아동학대를 “부모나 양육의 책임을 맡은 사람에 의해 그 아동에게 가해지는 심각한 손상”으로 한정하였다.

Kempe에 의해 처음 기술된 피학대아 증후군은 점차 아동학대와 방임(Child abuse and neglect)이라는 보다 광의의 개념으로 대치되었으며 미국에 있어서 1960년대 중반의 아동학대 신고법과 이 법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아동학대와 방임이 하나의 고정적인 위치를 차지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Fontana는 부적절한 아동취급 증후군(Maltreatment syndrome)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정서적 박탈, 방임, 영양 부족 등을 아동학대의 범위에 추가시켰다. 이어 Gil은 아동학대를 “아동들의 동등한 권리나 자유를 박탈하거나, 학대 또는 방임 행위나 이유에 의해 아동들의 성장 발달을 저해하는 개인, 시설 및 사회 일반에 의한 모든 작위 또는 무작위 행위”로 정의하였다. 지난 10년간 아동학대와 방임의 개념은 매춘과 아동춘화를 포함한 아동의 성적학대, 근로아동(Working children), 불량아(Street children) 악용, 아동 인신매매, 집단 보호시설에서의 아동학대 등으로 확대되었다.

Lau와 Kosberg는 아동학대를 크게 신체적 학대(Physical abuse), 심리적 학대(Psychological abuse), 물질적 학대(Material abuse) 그리고 권리의 침해 등으로 구하였다.

Kadushin은 아동학대의 개념을 보다 세분하여 신체적 학대, 불량한 양육, 기본적인 의료적 보호의 거부, 정기적으로 등교시키지 않음, 노동의 착취 또는 과도한 노동, 유해하거나 불건전한 환경에의 노출, 성적 학대, 정서적 학대나 방임 등으로 정의하였다.

미국의 아동보호 서비스법에 의하면 “아동학대와 방임이란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 그의 부모나 후견인으로부터 신체적, 정신적 또는 복지 상태에 위해나 위협을 받고 있

는 상황”으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 나라보다 약 3년전에 정부와 민간단체들의 공동 노력으로 아동학대 예방 프로그램을 시작한 대만의 경우 아동학대를 “부모 또는 아동의 보호자가 지속적으로 아동을 학대하거나 아동에게 신체적, 정신적 상해를 입히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는 아동학대에 대한 합의된 정의가 없으며 아동학대 범위의 설정에 대한 구체적 조사 연구가 미흡한 실정에 있다. 아동학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되는 아동복지법 제 18조 제 9호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아동을 학대하는 행위”로 학대의 금지 조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아동학대의 정의나 범위를 명시하지 않고 있다.

신체적 학대인 체벌에 있어서도 우리 나라의 경우는 체벌은 청소년 범죄나 좋지 않은 행동을 예방하거나 교정하기 위하여 엄격한 훈련을 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체벌을 훈육의 일부로 이해하려는 경향, 체벌은 교육적으로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며 정서적 발달이나 성격 형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입장에서 이를 적극 반대하는 경향, 그리고 교육적인 체벌은 훈육의 수단으로 수용하며, 비교육적인 체벌을 아동학대로 보는 경향 등이 있다.

한편 아동학대의 개념은 아동학대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정의될 수도 있는데 선행 연구들에 의하면 아동학대를 협의의 의미로 정의할 때는 주로 신체적 학대로 제한하며 “아동에게 관찰 가능한 상해를 입힌 행위”(미국 National Center on Child Abuse and Neglect)로 한정하나 이와 같은 정의는 가해자의 고의적 또는 우발적 행위 여부에 대한 추론이 없다는 문제가 있다. 아동학대를 광의의 의미로 정의할 때는 아동학대를 “아동의 복지나 아동의 잠정적 발달을 위협하는 보다 넓은 범위의 행동”으로 확대하며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나 방임, 아동의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나 환경, 더 나아가 아동의 권리 보호에 이르는 매우 포괄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부모나 교사 및 전문가들에 있어서 일반화된 아동학대의 정의가 없이 주관적 판단에 의해 축소 또는 확대되어 왔으므로 아동학대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한다는 것은 이 분야에 있어서의 중요한 쟁점의 하나이며 한국적 상황에서 아동학대의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만들거나 아동학대의 발견, 치료, 예방 등의 실무를 위하여 매우 필요한 작업이 될 것이다.

III. 아동학대의 현황

우리 나라는 아동학대에 관한 연구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으며 아동학대의 발생률이나 빈도에 대한 전국적 조사가 실시되지 못하여 아동학대의 현황을 논하기 어려운 형편에 있으나 연간 청소년 자살 건수가 170여명을 넘으며 가출아동이 1만명을 넘는 현실에서(1995 교육부) 가정과 학교와 사회에서 아동학대 및 방임은 점증되고 있는 사회문제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선행 연구들은 일부 지역 또는 일부 집단만을 대상으로 조사되었으며 아동학대에 대한 합의된 정의나 범위 및 측정 도구가 없어 조사자에 따라 그 결과에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아동학대의 현황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을 연도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986년 11세 이상 15세 이하의 가출아동 100명과 서울시 소재 일반 국민학교 2개교 및 중학교 3개교의 남녀 각 180명 도합 36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신영화)에서 신체적 학대의 경우 가출아동 집단과 일반아동 집단이 비슷하게 1년간 매맞은 경험이 98%로 높게 나타났다.

1987년 11-12세의 아동 1,245명을 대상으로한 조사(한국어린이보호회)에서 97%의 아동들이 생애에 최소한 1회 이상 그들 부모나 어른들에 의해서 매를 맞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정학회회원 및 소아과 전문의를 대상으로 설문한 조사(홍강의, 안동현)에서 응답자 490명 가운데 228명이 아동학대를 경험한 것으로 보고되었고 구타당한 아동들의 74.1%는 남아로 25.9%는 여아로 나타났다.

1988년 서울시 소재 국민학교 5 - 6학년 아동 665명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 검사(SEI)와 신체폭행지표(CRT)척도를 기초로 아동 구타에 관한 검사를 실시한 조사(황찬구)에서는 아동구타는 자아존중감을 손상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1989년 1985-1989년 사이의 서울시립아동상담소에 신고된 122명을 대상으로한 조사(유춘식)에서 피학대아의 연령은 10세가 전체의 16.2%, 그리고 8, 11, 13세가 공히 10.5%로 나타났다. 학대의 유형은 신체적 학대 55.4%, 방임 22.8%, 정서적 학대 7.6%, 아동유기 4.4%, 성적학대 2.2% 등으로 보고되었다.

1993년 전국 17개 시도의 부모 168명, 아동 170명 도합 338명을 대상으로 한 신체적 학대에 대한 실태 조사(이배근)에서 86.9%의 부모가 어린 시절 구타를 경험하였고 그 이유는 "자녀가 말을 안 들어서"(41.1%), "형제와 싸워서" (21.4%), "공부를 안해서

(14.3%) 등이었다. 자녀를 체벌한 97.6%의 부모들 가운데 82.7%가 상황에 따라 체벌이 허용되어야 할 것을, 11.3%의 부모가 해서는 안될 것을 주장하였다. 어린 시절 학대를 경험한 부모는 전체 응답자의 75%이었고 이들 부모들은 거의 자녀를 학대한 부모로 나타났다. 아내 폭행은 자녀 폭행을 동반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가해자의 경우 어머니가 59.4%, 아버지 22.8%, 형제 10.5% 등으로 나타났다.

최근 사회문제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는 성적 학대에 관한 연구(1986 신영화)는 가출아동의 17.0%, 일반아동의 1.9%가 지난 1년간 성적 노출을 강요당했고 가해자는 가출아동의 경우 부가 15.0%, 일반아동의 경우 부와 모가 각각 3.0%로 보고되었다. 1980 - 1989년 10년간 신문에 게재된 37건의 미성년자 성폭행 사례분석(1989 이영식, 이길홍)에 피학대아의 연령은 국3(28.6%), 국1(14.1%), 유치원(14.3%), 국2(12.2%)의 순으로 타났으며 가해자의 연령은 20- 29세(37.1%), 15-19세(25.7%), 40-49세 및 50-59세가 공히 11.4%로 나타났다.

서울, 부산, 광주, 대전 등 4개 도시 724명(남 426명, 여 295명)을 대상으로 한 중생 성폭행 실태 연구(1990 정동철)에서 강제적인 키스 15.7%, 성기접촉 17.4%, 원치않는 성경험 5.1%, 강간 2.5%, 윤간 0.8% 등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 대학생 및 근로 청소년 집단 도합 917명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에 관한 조사(1990 이종복)에서 대상자의 7.9%가 성적 관계를 경험하였으며 키스 3.5%, 애무 1.4%, 강제적인 성기노출 0.2% 등으로 보고되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선행 연구들을 종합하면 아동학대에 대한 전국 조사가 없었고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한 조사들에 있어서도 아동학대의 발생률, 구타의 심각한 정도,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도 등에 상당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우리 나라에 있어서 학대받는 아동들에 대한 치료, 발견 및 예방을 위한 노력은 1979년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서울에 아동학대 고발센터를 개설하면서 시작되었으나 시민의 무관심과 신고 정신의 미흡으로 1년만에 문을 닫았고, 1983년 한국어린이보호회가 상담 전화를 개설하였으며, 1985년 7월 서울시립아동상담소가 아동권익보호신고소를 개설하였으나 기대만큼 활성화되지 못하였다. 1988년 방콕에서 개최된 아시아 지역 아동 학대 세미나에 한국복지재단, 한국여성개발원 및 유니세프의 실무자들이 참석하고 1989년 3월 24일 유니세프와 한국복지재단이 보건복지부의 후원으로 한국아동학대예방 협회를 창설하면서부터 실질적인 아동 학대 예방 활동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는 중앙 사무국을 한국복지재단내에 두고 전국 17개 아동학대 신고 센터와 9개 지역 협회를 운영하고 있다.

IV. 미국, 영국, 프랑스의 아동학대 예방 활동과 법적 조치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통제하기 위한 법적 조치로서 아동학대 방지법을 제정하는 것은 당연한 사회적 노력의 하나이며 바람직한 아동학대 방지법의 제정을 위해서는 우리나라에 앞서 아동학대 방지를 입법화하고 시행 중에 있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의 법적 조치 실태를 검토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세계적으로 아동학대 신고를 포함한 아동학대 방지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학대받고 있는 아동의 발견, 개입, 치료, 예방을 위한 법적 조치가 활성화되고 있는 나라는 미국, 국, 프랑스,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벨 지움, 이탈리아, 브라질, 이스라엘, 우루과이, 캐나다 말레지아 등이다.

한편 네덜란드를 비롯한 독일 등 일부 국가들에서는 CDB(Confidential Doctor's Bureau)와 같은 국가 위원회에 의한 비밀 신고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CDB위원회는 소아과 전문의 또는 개업 의사, 행정업무 담당관, 전문 사회사업가 등으로 구성되며 신고된 사례에 대한 조사,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례에 대한 타기관 의뢰, 체계적인 사후 지도 등을 실시한다.

이들 가운데 비교적 아동학대에 대한 국가 개입이 강화되었고 국민의 신고 체제가 의무화되어 있는 미국, 영국, 프랑스의 법적 조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1 미국의 아동학대방지를 위한 법적 조치

미국에서는 아동학대신고법이 1960년대에 각주마다 입법화되었고 1970년대에 들어 오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조사와 전국적인 인식이 증가됨에 따라 아동학대의 개념이 보다 확대되어 점차 아동학대는 방임, 성적학대, 정서적 상해와 기타 아동복지에 유해하다고 간주되는 모든 형태의 학대를 포함시켰다.

이에 앞서 1874년 미국 최초의 뉴욕아동학대예방협회(New York Society for Prevention of Cruelty to Children)가 조직되었고 1881년 동 협회는 아동학대의 조사, 원 출두 전에 아동배치를 의뢰하고 가해자를 체포할 수 있는 즉결 재판소의 법적인 인가를 받은 기관이 되었다.

이에 반해서 보스톤과 필라델피아는 뉴욕과 같은 처벌 위주의 접근과는 달리 아동

을 가정에 머무르게 하는 가정 개입의 방법인 Protective Service Approach를 택하고 있다.

미국의 아동학대 신고법은 1962년을 전후해서 입법화 되었는데 이는 1946년부터 시작된 아동학대에 대한 의료적, 사회사업적인 연구 조사 노력의 결과이었다. 1962년 2명의 소아과 의사, 정신과 의사, 산부인과 의사, 방사선과 의사 등 5명의 저자에 의해 미국 아동의학협회지(the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Child Association, 1962)에 "The Battered Child Syndrome"이란 용어를 발표하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고조되었다.

미국의 아동학대 신고법의 제정을 위한 모델은 미국아동국(U.S. Children's Bureau) 미국박애협회 아동과(Children's Division of the American Humane Association), 미국 의학협회(American Medical Association), 주정부협의회(Council of State Government)에서 제출한 4개의 모델이 있었으며 이 중에서 미국아동국의 모델을 중심으로 5년간의 토론을 거친 후 하와이, 워싱턴 D.C., Virgin Island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아동학대 신법이 입법화되었다. 이렇게 하여 모든 지역에서 하루 24시간 신고 체제가 갖추어졌으며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들을 구금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로 1974년 연방 정부의 아동학대예방 및 치료법(Federal Child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Act)이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보건 교육, 복지성내에 국립 아동학대 및 방임 센터(National Center for Child Abuse and Neglect)가 설치되었다. 국립 아동학대 및 방임 센터는

- 1) 아동학대 및 방임에 관련된 조사 결과에 대한 자료 수집, 분석과 출판
- 2) 각종 정보의 개발 및 유지
- 3) 요원 훈련 자료의 수집 및 출판
- 4) 예방 및 치료에 관련된 기관에 대한 기술 지원과 프로그램 개발
- 5) 원인과 예방에 관한 조사실시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11개 지역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아동학대의 신고에 관해서는 1975년 이전에는 아동학대 신고법에 따라 아동보호기관 또는 주정부의 법시행 기관에서 신고를 접수하였으나 1979년에 이르러 전국 22개주와 2개 지역에서는 사회복지사가 유일한 신고처리기관이 되었으며 다른 26개주와 D.C.에서는 사회복지사와 법시행기관에서 신고를 받고 있다. 한편 미국박애협회는 사회복지사가 24시간 신고를 받을 수 없거나 법시행상의 문제로 아동보호가 안되는 주의 50%

이상에서 신고를 처리하는 기관이 되었다.

4.2 영국의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법적인 조치

아동학대와 방임에 대한 중앙 및 지방 정부와 민간단체의 인식이 날로 증가됨에 따라 학대받는 아동을 예방, 발견, 치료하는 사회사업가, 의사, 교사, 경찰 등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들이 늘어나게 되었다. 그 대표적인 지방 정부 기관의 하나가 1970년에 설립된 지역아동보호위원회(ACPC: Area Child Protection Committee)로서 지역사회의 아동학대 관련 실무를 맡고 있다.

아동학대와 방임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 요원과 자원 봉사 요원들은 1986년 정부에서 설립한 아동학대 관련 중앙연수원에서 훈련을 받으며 훈련 과정에는 지방정부의 사회사업가들과 보건 요원들을 위한 아동학대의 인식과 전문 기관 의뢰, 성적학대에 관련된 의료적 치료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영국아동학대예방협회(NSPCC: National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Children)와 같은 민간단체들도 학대받는 아동을 위하여 일하는 전문 요원들과 관련 단체 직원들을 훈련시키며 상담 및 조언을 해주고 있다. 또한 NSPCC는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보호전화(Child protection Helpline)를 운영하고 있으며 심각한 신체적, 성적 학대로부터 정서 학대나 방임에 이르기까지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들을 처리하며 학대를 받고 있거나 학대를 받을 위험한 상태에 처한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인 소송 절차를 담당하고 있다.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1989년 아동법(the Children Act 1989)은 학대받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법적 개입을 가능하게 하였다. 아동법에 규정된 아동학대의 위험에 처한 아동의 보호는 지방 정부 사회봉사과에서 담당하게 되어 있으며 관련 부서인 보건봉사과, 보호관찰과, 교육과, 경찰 및 민간단체들이 이에 포함되어 있다. 지방당국은 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관한 신고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 조사해야 할 법적인 의무를 지닌다.

지역아동보호위원회가 아동보호에 관련된 정책을 개발하고 관련 기관들에 대한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상호 협력을 담당하며 전국적 차원에서는 관련 행정부 각부서의 고위 공무원들로 구성된 아동학대에 관한 부서 상호간 그룹(the Inter-Departmental Group on Child Abuse)이 아동보호 관련 사항에 대한 정례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지역별로 각 지방 정부 사회봉사과는 해당 지역의 학대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생각되는 모든 아동들을 등록시키며 관련 부서간 협의 하에 등록된 아동들의 보호를 위한 협조 체제를 형성한다.

1990년 영국 정부는 아동학대 관련 자료 개발과 치료를 위한 전문요원 훈련을 목적으로 백만 파운드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였다. 보건성은 아동학대 관련 연구 조사 프로젝트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보건성은 아동학대의 평가와 전국의 의사 및 수간호원들로부터 보고된 성적학대에 대한 진단을 위한 전문 사회사업가 실무 지침서를 작성한 바 있다.

경찰은 법원의 영장을 받기 이전에도 아동의 거처에 개입하여 아동을 인수할 수 있는 긴급 개입권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1968년 스코틀랜드 사회사업법(Scotland Social Work Act 1968)은 학대받는 아동의 보호를 위한 법적인 틀을 마련하였다. 지방 당국은 가정, 위탁 가정, 보육 시설에서의 아동 학대 예방을 책임지고 있다. 아동보호위원회는 스코틀랜드 각 지역의 아동학대 관련 협조 체제를 개발하고 있으며 사회사업가와 경찰에 의한 공동 조사, 개입 및 성적학대에 관련된 사회사업 실무 지침서를 개발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모든 학교와 보육 시설에서 체벌이 금지되어 있으며 학대에 이르는 과중한 체벌은 범죄가 된다. 그 구체적 처벌 규정은 다음과 같다.

- 관습법에 위배되는 폭행 : 최고 구금 3개월 또는 5천파운드의 벌금형
- 신체 부위에 손상을 가한 폭행 : 최고 5년 구금형
- 중대한 신체적 손상 또는 부상 : 최고 5년 구금형
- 중대한 고의적 신체의 손상 또는 부상 : 최고 종신 구금형

4.3 프랑스의 아동학대 예방 노력

프랑스는 피학대 아동의 보호를 아동복지서비스의 최우선 과제로 다루어 왔으며 19C말 아동학대는 전적으로 신체적 폭행을 의미했으나 점차 심각한 애정의 결핍, 정신적 잔학성, 성적학대 등을 포함하게 되었다.

1989년 7월 10일자 개정법에는 법률 입안자들이 관련 행정부서의 강력한 역할을 강화하였고 학대받는 아동을 위한 Hotline System을 동시에 설치하였다.

사법 기관, 경찰, 교육, 병원 관련 행정부서가 공동으로 학대 사례에 대한 정보의 수집과 이에 대한 긴급한 대처를 위한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한편 전국적으로 설치된 Hotline은 전화 서비스를 무료로 매일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사례의 목격자, 아동 자신 등이 긴급사태에 대한 신고를 한다.

1991년 프랑스 청소년 법원은 3만 명의 피학대 아동 사례를 다루었으며 그 가운데 8천 5백명이 성적 폭행에 관련된 사례로 나타났다. 한편 법무성의 1990년 통계에는 80,402명의 아동학대 사례가 있었고 이 가운데 3,377명이 학대로 인해 형사 기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V.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CRC)

전세계 아동들의 생존, 보호, 발달을 위한 하나의 특기할 만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CRC: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이라고 할 수 있다.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1924년 국제연맹에서 채택된 “아동의 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1959년 국제연합은 이를 재검토하여 “아동 권리선언”을 채택한 바 있다. 아동 권리선언의 채택을 기념하여 그 20년 후인 1979년을 “국제 아동의 해”로 선포한 유엔은 10년후인 1989년에 마침내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CRC)을 통과시켰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은 1991년 9월 2일을 기해 20개국 이상의 비준을 받게 됨에 따라 국제법으로 공포되었다. 한국은 1990년 9월 25일에 동협약에 서명하고 1991년 11월 20일에 이를 비준함으로써 협약 당사국이 되었다. 1995년 현재 전세계 170개국이 동협약에 비준함으로써 동협약은 사상 가장 많은 국가들이 비준한 국제 협약의 기록을 갖게 되었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은 전문과 3부 54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본문 제1부는 1-41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협약의 대상인 아동을 18세 이하의 자(제1조)로 정의하고, 출신이나 성별을 포함한 무차별의 원칙(제2조), 아동의 최선의 이익 우선(제3조)등을 선언하고 있다.

2) 아동을 보호의 대상으로만 규정하지 않고 아동을 적극적인 권리의 주체로 규정하며 아동의 생명권(6조), 이름과 국적을 가질 권리(제7조), 표현, 종교, 집회의 자유(제13조), 고문이나 사형, 또는 무기형의 금지(제37조)등의 시민의 권리에 대한 적극적인 보장

3) 부모로부터의 분리 제한(제9조), 불법 해외 이송의 금지(제11조), 부모나 보호자 양육 책임(제18조), 아동학대로부터의 보호(제19조), 요보호아동에 대한 국가 보호(제20조), 입양에 있어서의 아동의 최선의 이익 우선(제21조), 등 가정 환경의 보호,

4) 아동의 생존과 발달의 보장(제6조), 장애아 보호(제23조), 기초 건강 관리, 질병과 양실조 퇴치, 산모 보호, 가족 계획, 유해한 전통관 습의 폐지 등 건강 보호(제24조), 사보장권(제26조), 탁아서비스의 제공(제18조)등 제반 아동 복지의 보장,

5) 의무교육(제28조), 여가 및 문화적 활동(제32조)등의 보장,

6) 난민 아동(제22조), 전쟁시의 아동(제38조)등 위급한 상황에 처한 아동의 보호, 체나 구금(제37조), 형사 피의자(제40조)가 된 아동의 권리 보호, 아동의 노동력 착취 금(제32조), 성적학대(제34조), 마약으로부터의 보호(제33조)등 아동학대로부터의 보호 등 아동의 권리로서 규정하고 있다.

협약의 제2부는 42 - 45조로 구성되었고 국가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을 시민사회에 홍보해야 할 의무(제42조), 가입후 2년 이내 그리고 그후 매 5년마다 협약의 이행 여부에 대한 국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할 보고의 의무(제44조), 4년 임기의 10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국제 아동권리 위원회의 구성과 임무(제43조)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3부는 46 - 54조로 구성된 보충성격의 내용으로 협약의 비준, 공개, 유보 사항, 협약의 폐기 등에 대한 보충 설명을 규정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을 비준함에 있어 국내법과 모순되는 3개조항을 유보한 바 있는데 그 유보한 사항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의 유보 사항은 협약 제9조 3항의 “자녀의 부모 면접권 보장”으로서 우리나라는 부모의 면접권(민법 제837조의 2항)만을 보장할 뿐 아동의 부모 면접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의 유보 사항은 협약 제21조 가항의 “입양의 절차”로서 동협약은 관계 당국의 허가를 통한 입양만을 인정하나 우리나라 민법은 당사자의 합의와 호적법에 따른 입양 신고로서 입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민법제783조, 호적법 제66조)

세 번째의 유보 사항은 협약 제40조의 2항 나호의 “상소권의 보장”으로서 우리나라는 비상계엄과 군사 재판에서 단심제가 인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 제110조의 4항 및 군사법원법 제543조)

VI. 아동학대방지법 시안

6.1 관계법의 고찰

아동학대가 심각한 경우 우리 나라의 적용할 수 있는 법적 조치로서는 아동에게 학대를 한 가해자에 대한 법적 제재 조치와 학대받는 아동을 위한 적극적 보호조치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아동학대에 대한 제재는 형사상 처벌 및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의 추궁, 학대 부모의 친권 상실 선고, 학대 교사의 내부적 징계 등이 있다.

가해자에 대한 형사상 처벌로는 형법 제260조에 의거 부모의 정당한 훈육권의 행사를 제외한 아동의 신체에 대한 구타 등 폭행을 가한 자는 폭행죄로 처벌되며, 형법 제276조는 아동을 장시간 집에 가두고 외출한 경우 감금죄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근로기준법 제5조에 의하면 13세 미만의 아동은 노동부 장관의 취직 인허증을 받는 경우 외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18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는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 위험한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사업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및 제110조에 의해 처벌된다. 형법 제274조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16세 미만의 자를 그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한 업무에 사용하도록 인도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형법 제271조는 아동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자(부모)가 아동을 유기한 경에는 유기죄로 처벌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924조는 부 또는 모가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 이외에 아동에 대하여 상습적으로 아동을 학대하여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의 친족 또는 검사가 법원에 그 친권의 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아동복지법 제15조에도 도지사는 아동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에 친권 상실의 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1994년 4월 1일을 기해 시행에 들어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제7조에 친족 관계에 의한 성폭력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시하고 성폭력범죄 예방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밝히고 있다(동법률 제4조).

이와 같이 현행법상 가해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찾아볼 수 있으나 실제로는 살인, 성적폭행, 기타 극단적인 경우 또는 가해자가 아동과 신분적인 관계가 없는 타인의 경우 이외에는 관계법에 의해 부모 등 보호자가 처벌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신체적 학대인 체벌의 경우 교육법 제76조에 체벌을 허용하고 있어 체벌 교사의 형사적 책임 문제와 손해 배상 청구 등 학부모의 승소 판례가 극히 드물다.

아동학대예방에 관련된 법적 근거인 아동복지법 제18조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

을 받은 아동을 학대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규정이나 학대에 대한 정의나 범위가 모호하며 실제로 이 법에 의해 처벌된 사례는 극히 제한되어 있으며 실제로 가해자나 다른 부모 측에서 보고할 리가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인 아동은 보고할 능력이 제한되어 있어 아동학대의 발견, 치료, 예방이 실효를 거둘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관계법을 포함하는 아동학대방지법을 제정하는 것은 아동학대의 예방을 위한 당면 과제라 할 수 있다.

6.2 아동학대방지법 시안

정부와 민간단체의 노력으로 아동학대를 보다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아동학대방지법이 하루속히 입법화되어야 할 것이며 정부가 1990년 9월 25일에 서명하고 1991년 11월 20일에 비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국내관계법 및 캘리포니아 아동학대 신고법(California Child Abuse Reporting Law)등을 참고로 하여 아동학대방지법이 담아야 할 내용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아동학대방지법의 목적과 아동학대방지법을 위한 부모나 아동의 보호자, 사회와 국가의 책임에 관한 선언

제2조(용어의 개념 정의) <1>아동에 대한 정의: 18세 미만의 자로 한다.

<2>아동학대의 유형별 정의 및 범위

1. 아동학대는 성적학대를 포함한 학대로 인한 심각한 신체적 또는 정서적 상해로 생명의 위협을 가져오거나 장애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 사고에 의하지 않은 고의적인 모든 신체적, 정서적 손상과 형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에 대한 성적 범죄를 포함한다.

2. 아동 방임에는 적절한 음식, 의복, 주택, 교육 또는 의료적 보호와 적절한 보호나 도를 포함하여 아동의 신체적, 지적, 정서적 능력 개발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아동보육 책임자의 지나친 태만이나 무관심을 포함한다.

3. 아동보호자: 아동학대 신고의 의무를 갖는 아동 보호자에는 교사, 부모, 위탁 가정 위탁 부모 및 직원, 아동 보호시설의 직원, 내과의, 외과의, 정신과의, 소아과의, 치과의사, 간

원, 척추치료사, 경찰, 아동상담소 직원 등을 포함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학대받은 아동을 보호하며 위기에 처한 아동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소요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아동 학대 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③ 아동학대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 없도록 보장되어야 하며 신고자 보호에 대한 법적 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 2 장 아동학대의 신고 의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제4조(아동학대 신고의 의무와 절차) ① 아동보호자, 의료인, 비의료인, 아동보호기관의 사자로서 아동학대가 확인되었거나 아동학대가 의심이 되는 사례에 대해 즉시 전화로 지정 아동 보호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36시간 이내에 서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학대를 받고 있거나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을 알고 있거나 목격한 사람은 누구나 지정 아동 보호기관에 전화 또는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제5조(신고의 내용) ① 신고의 내용에는 신고자의 성명과 연락처, 아동 및 보호자의 성명과 주소, 아동의 연령, 상해의 심각한 상태, 학대의 과거력, 기타 아동학대의 원인을 밝거나 가해자를 확인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서면 보고 서식은 전문 사회사업가, 전문 의료인, 관련 공무원 등의 협이에 의해 채택되고 서면 보고를 위한 신고 서식은 지정 아동 보호기관에 비치되어야 한다.

제6조(비밀의 보장) 신고자는 법률이 정한 사항 외에는 비밀이 보장되어야 한다.

제 3 장 지정 아동 보호기관

제7조(지정 아동 보호기관)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아동학대의 발견, 개입, 치료, 예방, 고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전담할 수 있는 전문적인 아동 보호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8조(지정 아동 보호기관의 권한) ①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지정 아동 보호기관의 전문 사회사업가가 영장이나 법원의 명령서 없이도 아동학대가 확인되었거나 의심이 되는 가정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정 아동 보호기관의 사회사업가는 해당 아동의 아동복지에 관련된 생활 환경을 조사하고 부모나 보호자로부터 진술을 듣기 위해 아동과 그의 형제들을 조사할 수 있

어야 한다.

③ 부모나 보호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협조할 수 없을 경우에는 아동을 가정으로부터 분리할 수 있어야 한다.

제9조(지정 아동 보호기관의 임무) ① 지정 아동 보호기관은 아동학대의 신고를 처리하며, 개입, 조사, 치료, 타 기관 의뢰,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홍보 등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지정 아동 보호기관은 조사 결과 학대가 발견된 사례에 대하여 시·도 아동 및 청소년 복지 관련 부서에 서면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③ 지정 아동 보호기관은 확인된 아동학대 사례를 지방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지정 아동 보호기관은 조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 4 장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 및 절차상의 특례

제10조(아동학대와 방임의 유형별로 심각한 정도에 따른 처벌) ① 아동학대와 방임의 유형별로 심각한 정도에 따라 징계권의 범위를 규정하고 그 범위를 넘어설 경우 구성되는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시해야 한다.

② 상습적, 악의적 가해자에 대한 가중 처벌 규정을 명시해야 한다.

제11조(절차상의 특례) ① 신고 의무의 불이행자에 대한 벌금등 경미한 법적 제재 수단 명시

② 아동학대에 관한 재판에 있어 지정 아동 보호기관의 전문 사회사업가, 전문 의료인 및 아동 복지 전문가의 참여

③ 아동과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비공개 재판의 확대와 대질 신문, 신고자 입회 하의 심문 제한

④ 보호 관찰 및 보호감호에 관한 규정

제 5 장 면책 및 특전의 면제

제12조(면책) ① 아동 보호자, 의료인, 기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들이 법에 의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서는 어떠한 민사상,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아야 한다.

② 지정 아동 보호기관의 직원, 의사, 교사 등이 학대가 발견되었거나 의심이 되는 사례에 대한 발견, 치료, 예방을 위한 어떠한 접근으로 인해서도 민사상, 형사상의 책임을 초래

해서는 안된다.

제 6 장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서비스

제13조(일시 보호시설) 심각한 학대를 받은 아동을 가정으로부터 긴급히 분리해야 할 경우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위탁 가정, 치료 및 재활 시설 등 일시 보호시설이 마련되어야 한다.

제14조(긴급 전화 상담 및 교육) ①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Hot-line이 설치되어야 한다.

② 부모를 포함한 가해자를 상담, 치료하며 교육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VII. 결 론

1979년 유엔이 정한 "세계 아동의 해"를 기념하여 그 10년후인 1989년 유엔은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채택하였으며 1990년 9월 2일 20개국 이상이 비준함으로써 국제법의 효력을 갖게 되었다. 우리 나라도 1991년 9월 25일에 동협약에 서명하고 1991년 11월20일 비준함으로써 협약의 당사국이 되었다. 따라서 동협약 상의 아동의 권리 조항을 실천하기 위한 관련 조항의 입법화와 관계법의 개정 의무를 지니게 되었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CRC)은 제19조에서 학대로부터의 아동 보호를, 제32조에서 아동 노동의 착취로부터 보호를, 제34조에서 성적 학대와 착취로부터의 보호를, 제35조에서 아동의 약취, 유인, 매매 등의 금지를 그리고 제36조에서 기타 형태의 착취로부터의 아동 보호를 강제 규정으로 명시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협약 당사국은 동협약 상의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입법적, 행정적 기타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동협약 제4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협약의 실천 사항에 관한 국가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협약 제44조에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학대받는 아동을 치료하며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현행 아동복지법 제18조의 금지규정은 매우 모호하고 단편적이며 동법 제35조의

벌칙 규정도 매우 미약하며 실제적인 법적 제재를 가하는데는 많은 제약이 있다.

아동학대와 방임이 심각한 사회문제의 하나로 점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으로서의 아동 학대 방지 법의 입법화는 매우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란 점에서 아동 학대 방지 법의 제정과 아울러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참여와 지역사회 중심의 연결망 구축, 신고 의식의 제고, 법집행기관의 적극적인 노력 등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부부 폭력은 아동학대와 방임에 깊게 연관되어 있으며 존속 살인을 포함한 자녀들의 부모 폭행이 또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아동학대방지법은 가정폭력방지법에 포함시켜 추진하는 것이 보다 현실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한국여성의전화가 주축이 된 가정폭력방지법 추진을 위한 전국연대가 결성되고 입안을 위한 전국적 노력이 결집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시민 운동의 하나로 평가될 것이다. 부모는 자녀들의 최초의 교사이며 가정은 최초의 학교라는 점에서 학대와 방임과 폭력이 없는 가정은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오늘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평화를 사랑하고 더불어 사는 지구촌의 일원으로서의 국제사회 시민 교육의 가장 원초적 학습과 경험의 장이 될 것이며 이를 위한 가정 폭력 방지법과 그 일부로서의 아동학대방지법의 입법화가 하루속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박균성, 1992, "아동학대의 법적 고찰", 충남아동학대예방협회 제1회 세미나 자료집
 윤영숙, 1989, "미국아동보호서비스 전달 체계", 아동학대,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이배근, 1992, "아동학대의 범위와 정의", 국회보, 1972년 봄호, 국회사무처
 이배근, 1993, "한국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의 실태와 예방 대책에 관한 연구", 석사 학위논문, 중앙대학교사회개발대학원
 한인섭, 1992, "아동보호와 아동의 권리", 한국 아동 학대 예방 협회 제18회 세미나 자료집
 Costin, Lalab B., et al. 1991, Child Welfare, White Plains, N. Y.: Longman
 Newberger, Eli H., 1982, Child Abuse, Boston, Mass.: Little, Brown and Company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1994 National Report o

노인학대의 실태와 법의 필요성

서 해 경(한국 노인의 전화 상담이사)

1. 문제 제기

기술, 지식, 정보와 인구폭증 시대에 아직도 근대화 껍질에 둘러싸여 사는 노인들은 어쩌면 이 시대의 '주변인' 인지도 모른다. 전통적인 사회에서 존경의 대상이었던 분들이 하루아침에 '거추장스러운 존재'로 전락했다. 더욱이 평균수명이 높아지면서 노인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의학의 진보는 수명을 연장시켜 노인 인구의 절대적 증가와 함께 노화 현상에 따른 기능 저하와 만성 퇴행성 질환으로 가족 부양 문제는 더욱 험겨워졌다.

이처럼 노인들의 생활 영역은 과거에 비해 축소되어 가고 대인관계가 이전에 비해 활발하지 못하고 가족들로부터의 무관심 등으로 건강하지 못한 채 혼자 보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아진다. 그러므로 집에서의 생활이 노인의 주된 생활로 전환되면서 이전 보다 학대가 일어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이 사회의 구석구석에서 알게 모르게 자행되고 있는 노인 학대, 날로 심각해져가는 노인 학대는 인구구성중 결코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경제 성장과 삶의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던 고령 인구에 대한 배반이 아닐 수 없다.

얼마전 대검찰청의 분석에 의하면, 존속 살해의 경우 지난해와 93년에 각각 32건과 41건이 발생하였으며 또 존속상해및 폭행은 93년에 9백 50건, 지난해에 9백 54건 등 월 평균 80여건씩 일어나고 있다. 이처럼 노인들에 대한 학대는 신체적인 직접적 폭력, 폭행은 물론 감금, 살인, 부양 거부 이밖에도 식사 제공 거부, 신경안정제 강제 주입, 재산 상속 문제등 이전보다 다양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커짐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대부분의 피해 노인들은 5장에서 다루어지겠지만 경찰에 고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폭력 사실을 창피하게 여겨 대부분 문제를 감추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들은 가정내 폭력 문제를 가정 내에서 해결해야 하는 사안으로 보거나 혹은 경찰에 신고할 경우 가정 구성원간의 관계가 그나마 완전히 깨질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노인 학대에 대한 관심은 지난 20년전부터 극적으로 증가되어 왔다. 1970년대 중반 이래로 주에서는 노인 학대에 대한 강제보고 법령을 통과시켰다.

노인 문제가 많고 노인 문제에서도 선진국인 미국에서 노인 학대는 이미 사회문제가 되어 있고 그 심각성과 대응의 곤란함은 보통 수위를 넘어섰다.

성인이 된 아들이나 딸로부터 버림받는다든지 육체적으로 학대받고 있는 고령 자수는 60-100만명으로 추정되며 비극적인 건강 문제로서 주목받기 시작했고, 아동 학대와 같은 정도의 중대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아동 학대와는 달리 고령자의 학대는 대부분 표면화되지 않는다.

이미 선진국의 학대 관련 문헌 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1) 학대의 범주 2) 학대의 방법과 규모 3) 학대의 본질과 방법 4) 어떻게 학대를 감소시킬 수 있는지 5) 학대의 배경 6) 왜 학대가 일어나고 7) 무엇이 위험 요소이며 8) 어떠한 종류의 개입이 필요한지 등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노인 학대 관련 자료가 거의 없는 관계로 본 논문은 한국 노인의 전화 상담 사례와 외국 문헌 조사를 중심으로 노인 학대 관련 개념 정의, 학대의 범주, 학대의 사례를 통해서 본 학대 원인, 학대 방법, 규모와 배경, 한국 노인의 학대 실태 조사 결과와 그 대안에 관해 논의되어질 것이다.

II. 노인 학대 관련 개념 정의

학대에 대한 정의는 무척이나 어려워서 많은 학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 최근 미국 전문패널토의에서도 합의를 보지 못했다. 근본적인 정의는 있을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분명하다.

본문에서의 '학대'는 폭행과 폭력의 개념 일부가 포함된 광의의 개념으로 쓰인다.

학대 관련 개념 정의

1. 유기(遺棄): 유기란 요부조자(要扶助者)를 보호 없는 상태에 둠으로써 그 생명, 신

체에 위협을 가져오는 행위를 말한다. 부조를 요하는 자란 다른 사람의 조력 없이 자기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협을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노환, 질병, 기타의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이다. 여기에서 요부조자를 보호받는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보호 없는 상태로 옮기는 좁은 의미의 유기와 요부조자를 종래의 상태에 두고 떠나거나 생존에 필요한 보호를 하지 않는 넓은 의미의 유기가 포함된다.

2. 학대(虐待): 학대란 육체적이나 정신적으로 고통을 가하는 가혹한 대우를 뜻한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음식, 휴식, 수면을 허용하지 않거나 폭행을 가하는 경우가 여기에 속한다.

3. 폭행(暴行): 광의의 폭행은 사람에 대한 직접, 간접의 유형력의 행사를 말한다. 그것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지만 반드시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이 가하여질 것을 요하지 않고 문건에 대한 것이라 할지라도 간접적으로 사람에 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면 족하다. 공무집행방해죄, 특수 도주죄, 또는 강요죄의 폭행이 여기에 해당된다. 협의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의 행사를 의미한다. 나아가 폭행의 가장 좁은 의미는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가장 강력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한다. 강간죄와 강도죄의 폭행이 여기에 해당한다. 다만 강도죄의 폭행은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임 요함에 대하여, 강간죄의 그것은 이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한 여성이 남성에게 강간당했을 때 이 경우는 폭력뿐만 아니라 폭행에도 해당된다.

4. 폭력: 폭력은 불법, 부당하게 행사된 물리적 강제력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폭력은 절대적 폭력뿐만 아니라 일정한 행위를 강제하도록 영향을 미치는 강제적 폭력을 가리키기도 하고, 폭행은 물론 협박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어떤 상품의 광고에서 여성을 상품화하였다면 이 경우는 폭행이 아니라 폭력에 해당된다.

학대의 범주

1. 학대는 다음의 5가지 범주로 분류된다.

(1) 육체적 학대 (physical abuse): 몸의 상처, 고통, 손상을 초래하는 육체적인 힘의 고의적인 행사. 이 전통적 관념은 누군가가 다른 누군가를 때리는 것인데 밀거나

결박하는 등이 학대에 속할 수 있다.

의적 명시에 의한 육체적 학대의 확인은 일반적으로 쉽지는 않지만 Bennett에 의하면 '꽉 쥐어서 손가락 자국이 남는 것 같은 난해한 형태들도 요즘 인정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2) 성적 학대(sexual abuse)는 동의 없이 성적 접촉이 있을 때 발생, 노인들 사이에선 드물게 여겨진다.

(3) 심리적 학대(psychological abuse)는 위협, 수치심 또는 말로써 하지 않는 육에 의한 정신적, 정서적 고통의 고의적 가해이다' 언어학대가 심리적 학대로 구분되기도 한다.

(4) 재정적 학대(financial abuse)는 '노인의 돈, 재산 또는 어떤 것이든지 노인의 자원을 허가 없이 부정적 하게 사용하는 것

(5) 무관심(neglect)은 보살피줄 의무가 있는 사람에 의한 고의적 또는 비고의 적 실수이다' 무관심'을 학대의 일종이라고 여길 수 있는지에 대한 의미론적인 문제는 별도로 생각하고 예를 들어 Johnson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노인 대우 부주의(elder mistreatment)라는 용어를 만들었다. 무관심을 필수적인 주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게을리 하거나 소홀히 하는 것이다.

2. 이전과 비슷하지만 학대(abuse)를 다음과 같이 분류 정의 내리기도 한다.

- (1) 고의적으로 육체적 고통이나 상처, 정신적으로 고통을 가함
- (2) 부당한 감금
- (3) 보살피야 할 사람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고의적으로 박탈하는 것
- (4) 착취(exploitation)는 무능한 성인 또는 그의 자원을 다른 이의 이익을 위해 불이익으로 또는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이라 정의
- (5) 무관심(neglect)은 혼자 사는 무력함이나 자기 자신을 돌볼 수 없는 사람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유지시키지 못한 상태로 정의

3. 상담 사례를 내용별로 본 분류는 다음과 같다.

- (1) 신체적인 것
- (2) 주어야 할 것을 주지 않는 것(무시, 방치, 태만 등).
- (3) 정신적인 것
- (4) 물질적인 것의 4가지로 대별해서 사용했고 분류라고 해도 엄밀히 구분되는 것이 아니고 각각의 것들이 상당히 광범위한 것을 포함하고 있는 형태이다.

우선, '신체적인 것'이라 하면 보통은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하지만 여기에서는 행동의 제한이나 강요도 포함시켰다.

둘째 '주어야 할 것을 주지 않는다(무시, 태만, 방치)'는 정확히 표현하기 어려워서 좀 어색하게 쓰여지긴 했지만 이것은 영어에서 말하는 무관심(neglect)에 상당하는 것이다. 이는 무시, 방치, 태만 등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나 좀더 적극적인 거부나 방해의 의미는 포함되지 않았다. 보건, 치료, 복지등 관계자의 방문이나 도움, 외부로부터의 연락이나 면회, 오락의 기회 등을 막는 것까지 포함하게 되며 무관심(neglect)은 태만만으로는 어쩐지 충분한 표현이 못된다는 생각에 굳이 '주어야 할 것을 주지 않는다'로 했다.

다음 '정신적인 것'에는 적극적인 공격이나 압박뿐만 아니라 무시나 간접적인 것도(노인을 감싸주는 사람을 공격하는) 포함되어 있다.

끝으로 '물질적인 것'은 여러 가지 경제적인 면에서의 학대이다.

어느 학대가 어느 것 하나로 분류되는 것이 아니고 동시에 두개 이상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특히 '정신적인 것'은 다른 세 가지의 어느 것에도 수반되는 것)경우가 많은 것은 말할 것도 없다.

III. 상담 사례 내용별로 본 분류

주 제	며느리의 복수 (?)
상담주제	노인학대 (폭력, 주어야 할 것을 주지않는것, 정신적 학대)
관 계	며느리 40대, 손자 10대 시어머니 60대후반
내 용	
<p>노인은 젊었을 때 사교적이고 교제가 넓었다. 며느리 구박도 상당했을 것으로 이웃에서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이다. 주위에서 며느리에게 동정적일 정도이었다. 그 노인이 6년전에 뇌출혈로 거의 외상상태가 되어 현재는 대소변도 못가리는 상태이다.</p> <p>며느리는 활달하고 불임성 있고 부지런한 사람이다. 옛날 시어머니로부터 당한 일에 대해 이 정도의 일은 당연하다고 하는 생각이 말속에 절절이 잘 나타나 있다.</p> <p>식사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는 날이 대부분이고 불결한 것은 말할 수도 없다. 악취가 나고 기저귀속의 변의 양이 많으면 꼬집히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먹는 양, 마시는 양을 줄이고 있다. 할 수 있는 일은 조금이라도 자기가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마음가짐이 있어서인지 때로는 도우려고 걷다가 도중에 넘어져 버린다든지 변을 제대로 처치한 것으로 생각했지만 오히려 변기나 옷가지에 묻힌다든지 해서 며느리에게 채인다든지 물건으로 던져 맞는다든지 한다.</p> <p>고교생인 손자는 착하게 식사를 갖다주는일도 있지만 기분에 좌우되는적이 많고 비위에 맞지 않으면 어머니와 같은 일을 한다. 장남은 근무처에서 귀가가 늦고 집을 비웠을 때의 일을 알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묵묵하게 있었다.</p>	

주 제	무심한 딸
상담주제	노인학대(냉대, 무시, 경제적 착취, 정신적 학대)
관 계	할머니(67세), 딸(43세)
내 용	
<p style="text-align: center;"><u>어머니(67세)가 딸(43세)문제로 상담한 케이스</u></p> <p>젊어서 온갖 고생을 다하면서 자식들을 대학까지 공부시켰고 딸에게는 아파트를 세별이나 사주었는데 지금에 와서 딸이 어머니를 배척한다.</p> <p>5층짜리 빌딩을 지을 때도 재정전체를 딸에게 일임하였는데, 어머니는 건축 도중에 몸에 병이 생겨 통원을 하게 되었는데도 딸이 도와주지 않아 섭섭해했다. 돈을 가져갈 때를 제외하고는 철저히 냉대했다.</p> <p>자신은 딸을 위해 딸 집에 가서 청소도 해주고 모든 집안일을 다해주었는데 딸은 어머니를 냉대하고 커피를 끓여도 혼자 마시고, 과일을 먹어도 혼자 먹고 집안일은 하기 싫어했다.</p> <p>그래서 이 할머니는 자식에 대한 희생의 결과가 이런 것인가 하고 심한 충격과 냉가슴을 앓고 있다고 하소연하였다.</p>	

주 제	며느리에게 푸대접받는 친정어머니
상담주제	노인학대(소홀, 경제적 착취)
관 계	친정어머니(67세), 딸
내 용	
<p><u>딸이 친정어머니(67세)의 문제로 상담한 케이스</u></p> <p>아들만 위하여 평생을 보따리 장사를 하면서 살아오신 어머니가 혼자 사다가 현재 당뇨병 말기가 되어 6개월 전에 큰아들 집으로 들어가 함께 생활을 하게 되었다. 어머니는 정신은 건강하시지만 누워서 생활하시고 겨우 기어서 다니실 정도이다.</p> <p>문제는 큰아들 내외는 5개월 전부터 어머니랑 이야기도 하지 않고 어머니는 큰아들 내외와 함께 살고 있기는 하지만 소외상태이다. 며느리는 매일 나가 나가 기전 식사한끼를 방문 앞에 밀어 놔두고 밤에 들어온다. 어머니는 끼니를 거르는 날이 많으시다.</p> <p>큰아들은 어머니를 모시면서 주택문제 등으로 약 2천 5백만원에서 3천만원 정도를 어머니로부터 받아서 썼고, 어머니는 4남 2녀를 두셨는데 다른 아들들은 큰형이 엄마 재산을 다 가졌으니 형님이 알아서 하라며 「소 닭 쳐다보듯」하고 있어 보다 못한 딸이 엄마만 생각하면 불쌍하고 안타깝고 하여 큰오빠에게서 엄마의 돈을 받아내는 방법은 없는지, 큰오빠를 혼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엄마가 가실 수 있는 시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을 문의해왔다.</p>	

주 제	박대 당하는 우리 어머니
상담주제	노인학대(박대, 정신적 폭력)
관 계	어머니(73세), 딸
내 용	
<p><u>딸이 어머니 (73세)문제로 상담한 케이스</u></p> <p>3남 3녀를 둔 할머니가 2년전 중풍에 걸리셔서 기저귀를 차고 생활하고 아픈 몸이지만 혼자 생활하신다.</p> <p>처음에는 큰아들이 모셨지만 큰며느리가 많이 싫어해서 둘째 아들이 모시고 갔다.</p> <p>그후 자식들끼리 큰아들이 5개월 모시고, 둘째 아들이 5개월 모시고, 셋째 아들이 방학동안 모시자고 이야기를 해서 큰아들 집에서 먼저 5개월을 모시는데 큰며느리가 밥도 안챙겨드리고 구박, 학대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게다가 큰며느리가 친정식구들이 다 모인데서 큰아들하고 못살겠다고 울고불고해서 큰아들이 「각서」를 그 자리에서 써줄 만큼 큰아들은 큰며느리에게 너무 끌려 다닌다.</p> <p>그래서 지금은 설날까지만 둘째 딸이 모시고 있는데 앞으로 중풍에 걸린 어머니를 누가, 어떻게 모실지가 걱정이 되서 둘째 딸이 전화하였다.</p>	

주 제	쫓겨나는 노부모
상담주제	노인학대(쫓아내기, 경제적 착취)
관 계	부(73세), 모(70세), 장남
내 용	
<p><u>노부모 (73세,70세) 가 장남문제로 상담한 케이스</u></p> <p>노부모가 장남과 동거한지가 1년이 조금 넘었다. 그런데 동거하면서 큰아들 내외는 부모님한테 용돈도 드리지 않고, 먹는 것, 보약 등을 자기 식구한테는 잘하면서 부모님은 전혀 보살피지 않고 인간대접을 하지 않는다. 어머니가 6개월 정도 몸져누워 있었는데도 모시고 병원에 가지 않고 며느리가 너무 지독하다.</p> <p>어머니는 백내장 수술하시고, 아버지도 몸이 안좋으시고 두분 다 건강은 나쁘시다.</p> <p>큰아들이 예전에 아버지 명의로 집을 사면서 프리미엄을 많이 받아서 그 관계로 아버지에게 천만원을 주기로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액수를 줄여 4백만원을 주겠다고 하면서 2백만원을 보내왔고, 지금은 부모님이 셋째 딸과 함께 살고 계신데 나머지 2백만원은 집을 다 가져가면 보내 주겠다고 하여 집안 식구들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지금 부양료 청구소송을 고려중이며 이렇게 학대했다는 사실을 친척과 주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고 하면서 법률 상담을 문의해왔다.</p>	

주 제	부양료 청구소송
상담주제	노인학대(무관심, 정신적 폭행, 부양료)
관 계	남성노인(78세)
내 용	
<p><u>남성노인 (78세)과 아들부부의 갈등으로 상담한 케이스</u></p> <p>권할아버지는 아들과 며느리의 학대로 살 수가 없다고 하신다.</p> <p>며느리에게 한달 용돈으로 150,000원을 요구했지만 그네들은 2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아들은 월 200만원정도를 벌지만 용돈을 한푼도 주지 않고 있다.</p> <p>집에서는 본인이 들어오고 나가도 어느 누구도 아는 척을 하지 않는다. 같이 살아도 혼자 사는 것 같고, 무언의 학대를 한다. 이럴 바엔 나가고 싶은데 돈이 없어 나갈 수도 없고 심지어는 손자들도 할아버지를 본 척도 하지 않는다.</p> <p>본인은 아들과 타협할 시간도 없고 해서 부양료 청구소송을 하시겠다고 법률상담소를 전전하신다.</p> <p>그러나 권할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법적으로 처리가 힘들더라도 '혼내주는 정도'를 원하시고 계시다. 같이 사시기가 힘들어 죽고싶다고 몇 번이나 말씀하신다.</p>	

주 제	손자의 폭력
상담주제	노인학대 (폭력, 경제적 착취)
관 계	할머니 80세, 손자 10대
내 용	
<p>노인의 외아들은 3년전에 사망하고 그 며느리는 10년전에 죽었기 때문에 손자 셋하고 살고 있었지만 위로 둘이 가출해 버렸기 때문에 셋째 손자와 둘이서 계속 살아오고 있었다.</p> <p>중학교 2학년인 이 손자는 거의 학교에는 가지 않고 집에서 빈둥빈둥하고 있다든지 불량배들과 어울려 놀러 다닌다든지 하고 있다. 돈의 씀씀이가 크고 노인에게 '돈줘' 하고 고함을 친다던가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때리고 차고 물건을 집어던진다.</p> <p>노인은 마음 아픈 것이 끊이지를 않는다.</p> <p>반년 전에는 골절로 얼마간 움직이지도 못했다. 입원할 것을 종용받았지만 입원하지 않고 견딜 일도 있었다. 집에 있는 것이 겁이 나서 가출해서는 친구 집을 전전하면서 한달 가까이되었으나 최근에는 손자가 경찰에 체포되었다는 연락이 있었다.</p>	

IV. 가해자별로 본 노인학대의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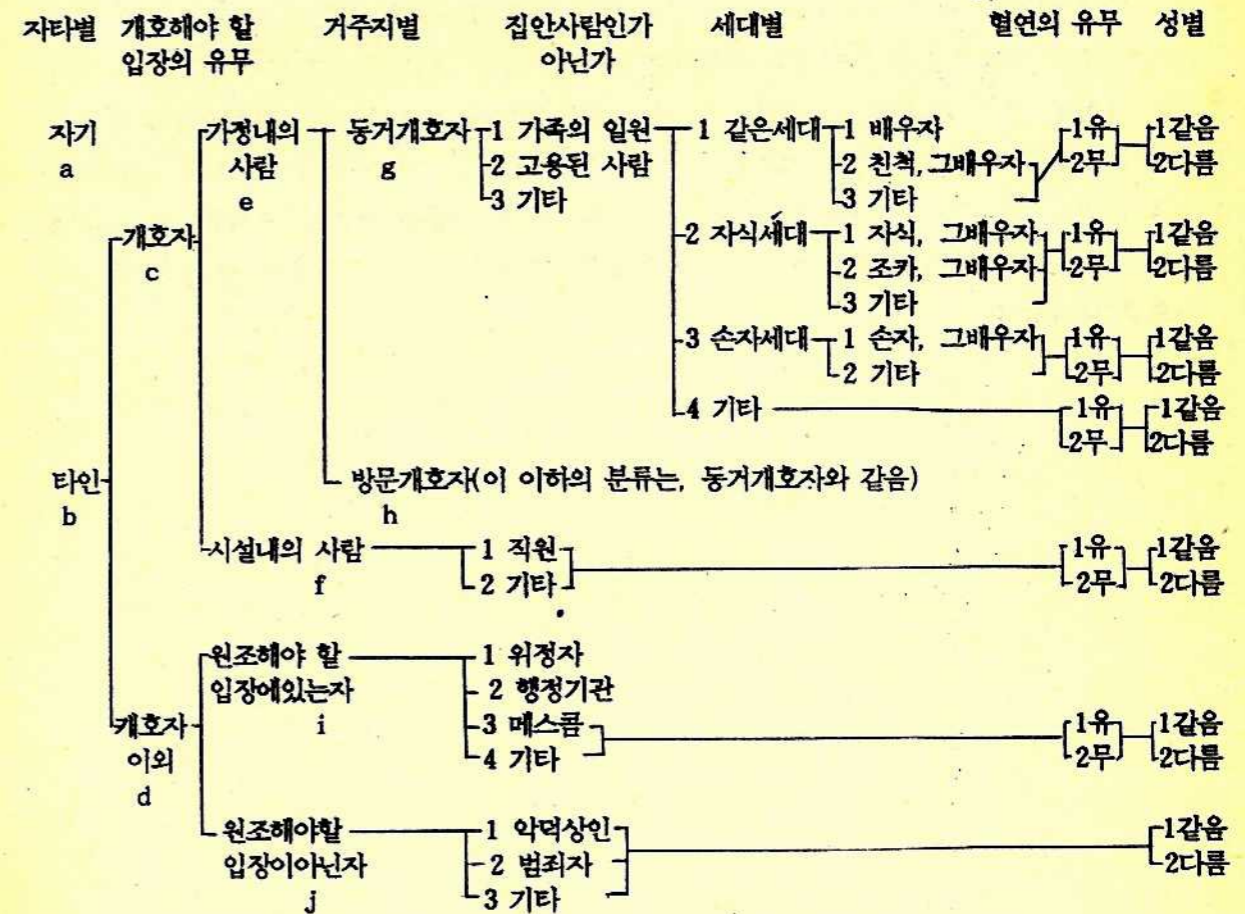
1. 자기 (a)는 영어로 self-neglect (자기 무관심)이며, 태만이라고 하겠다. 주어야 할 것을 주지 않는 가해자가 다른 사람이 아닌 노인 자신이라는 것이다.
2. 이 논문에서는 가해자가 타인이었을 때를 주로 다룬다.
3. 동거하는 가족 (g-1) 특히 며느리(g-1-2-1-2-1)나 자식(g-1-2-1-1-2)이 노모를 학대하는 패턴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다.
4. 배우자 학대는 (g-1-1-1) 나이를 따지지 않으면 노인 학대나 아동 학대보다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McMaster 대학 정신의학 교수인 John Byle박사에 의하면 '배우자간 학대는 아동학 대의 1.5배나 되고 희생자의 10%는 긴급 치료를 필요로 한다. 희생자의 95%는 여성이었다.' 라고 말한다. 노인이 배우자에 의해 학대받는 케이스는 자녀들에 의해 학대받는 것 보다는 적다.
5. 간병인이나 가정부 등 고용된 사람(g-2)은 노인에 있어서나 가정으로나 고마운 존재이지만 가끔 물리적 폭력 또는 경제적 착취를 한다.
6. 사설 요양원 직원 (f-1) 에 의한 경우도 수는 적지만 무시할 수 없다.
7. 노인홈(d) 에서 동료 노인 (f-3)으로부터 학대를 받는 경우
8. 원조해야 할 입장에 있는 (i) 위정자 (i-1)들이 노인을 아프게 하는 것, 노인을 실망시키는 것 (복지 정책의 미진, 노인 환자 의료비 부담 증가 등) 이 있다.
9. 행정기관 (i-2)에 관해선 담당자로서 바르고 정당하게 해야 할 것을 하지 않거나 혹은 하고 있더라도 열의가 없는 것을 말한다.
10. 매스컴 (i-3)이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텔레비전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면 노인을 놀림감으로 골려 줌으로써 자아내는 억지 웃음 등 유쾌하지 못한 것이 많다.

11. 악덕 상인(j-1)은 노인을 속여서 퇴직금이나 노후 자금을 송두리째 가져가 버리는 물질적 (경제적) 학대를 하는 악덕 상인이다.

12. 범죄자 (j-2) 노인의 악한 점을 노린 범죄의 경우로 강탈같은 것이 있다. 화풀이식 폭력에 노인이 타겟이 되는 경우도 있다.

가해자별로 본 노인학대의 분류



V. 한국의 노인 학대 실태 조사

1994년 한국 형사 정책 연구에서 서울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 593명을 대상으로 노인의 범죄 및 범죄 피해에 관한 조사를 실시했다. 그중 학대의 피해 실태에 관한 내용을 간추려 보았다. 노인들의 학대 피해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으며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라는 점에서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1. 학대의 피해 실태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지만 8가지 조사 항목 중에서 '나를 돌봐 주는 사람으로부터 없어서 주었으면 하는 느낌을 받았다'는 항목에 17.3%의 사람이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나는 나를 돕거나 보호해 주는 사람으로부터 폭언이나 모욕을 받은 적이 있다.'가 17% 이었으며, '나를 2-3일 동안 혼자 집에 내버려 둔 적이 있다'가 14.8%, '나를 돌봐 주는 사람으로부터 부양을 꺼려서 거처를 여러 번 옮긴 적이 있다'가 14.6% 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약 65%가 학대 피해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 학대 피해 조사 항목>

8가지 조사 항목
1. 나를 돌봐 주는 사람으로부터 부양을 꺼려서 거처를 여러 번 옮긴 적이 있다.
2. 나를 돌봐 주는 사람으로부터 없어서 주었으면 하는 느낌을 받았다.
3. 나를 돌봐 주는 사람으로부터 잠자리를 제대로 마련해 주지 않거나 분위기를 해쳐서 잠을 자지 못한 적이 있다.
4. 나를 돌봐 주는 사람으로부터 돈벌이를 강요받는 적이 있다.
5. 나를 2-3일 동안 혼자 집에 내버려 둔 적이 있다.
6. 나는 집에서 음식을 주지 않아서 끼니를 거른 적이 있다.
7. 나는 나를 돕거나 보호해 주는 사람으로부터 폭언이나 모욕을 받은 적이 있다.
8. 나를 돌봐 주는 사람으로부터 신체적인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

2. 학대의 피해의 원인

학대의 피해를 경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를 입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지를 알아본 결과 '자신의 무능력 때문'이라는 사람이 53.8%, 상대방의 부도덕함 때문이 20.8%, 전반적인 사회 풍토 때문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19.2% 등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노인들은 피해의 원인이 가해자인 사회에 있기보다는 피해자인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음을 알 수 있다.

3. 피해에 대응하는 방법

<표2. 피해에 대응하는 방법>

피해에 대한 대응 방법	
소극적 대응	(1)그냥 참았다. 4(3.1%)
	(2)아는 사람에게 하소연하였다. 77(60.6%)
적극적 대응	(1)상담 전화 등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29(22.8%)
	(2)화를 내거나 상대방을 나무랐다. 16(12.6%)
	(3)경찰에 신고하였다. 1(0.8%)

또 피해에 대한 대응 방법은 소극적 대응과 적극적인 대응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소극적 대응에 속하는 비율이 83.4%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4. 학대 처벌에 대한 태도

<표3. 학대 처벌에 대한 태도>

비율(%)

문항	처벌에 대한 태도		계
	처벌 해야한다	처벌하지 않는다	
① 자신이 돕거나 보호해 주는 사람에게 폭행을 가하는 것	90.4	9.6	100
② 자신이 돕거나 보호하는 사람에게 폭언을 하는것	79.6	20.4	100
③ 자신이 돕거나 보호하는 사람에게 음식을 주지 않는것	81.3	18.7	100
④ 자신이 돕거나 보호하는 사람을 2-3일 이상 혼자 집에 내버려두는것	76.5	23.5	100

유기, 학대의 처벌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를 보면, 4가지 항목 모두 상당한 비율의 사람이 처벌을 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①자신을 돕거나 보호해 주는 사람에게 폭행을 가하는 것은 90.4%가 처벌해야 한다고 응답하므로써 가장 많은 사람이 처벌해야 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②자신이 돕거나 보호하는 사람에게 폭언을 하는 것은 81.3%, ③자신이 돕거나 보호하는 사람에게 음식을 주지 않는 것은 79.6%, ④자신이 돕거나 보호하는 사람을 2-3일 이상 혼자 집에 내버려두는 것은 76.5%가 생각하였다. 노인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학대를 처벌해야 하는 범죄로써 생각하고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5. 학대 경험 여부와 처벌에 대한 태도

<표4. 학대 경험 여부와 처벌에 대한 태도>